

#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2. 6. 16

民族統一研究院

## 序 文

세계적인 脫冷戰化·脫理念化 추세로 말미암아 國際秩序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南北韓은 1991년 12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19일 이를 발효시키는 한편, 協議·實踐機構인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南北和解·協力時代를 열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核開發 및 核物質에 대한 國際原子力機構의 臨時查察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바, 本 研究院에서는 북한의 核問題가 남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 6월 16일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라는 주제로 第5回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많은 斯界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核問題, 남북관계의 現況 評價 및 發展方向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報告書는 금번 國內學術會議에서 발표된 論文과 討論內容을 수록한 것이며, 토론내용은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일부 재편집되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북한 核問題 解決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남북화해·협력시대 정착은 물론 政策代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2. 6.

民族統一研究院

政 策 研 究 室

# 目 次

I. 開會辭 .....	李 秉 龍	1
II. 第1會議：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		3
1. 主題發表 .....	全 星 勳	5
2. 討 論 .....		35
III. 第2會議：南北協商의 成果와 南北關係 發展方向 .....		67
1. 主題發表 .....	鄭 圭 燮	69
2. 討 論 .....		99
<附 錄> 會議概要 .....		131

## 開 會 辭

오늘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라는 주제로 第5回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司會者·討論者로 참여해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公私多忙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歡迎하며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國際原子力機構는 지난 달 25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北韓의 核物質 및 核施設에 대한 臨時查察을 실시하였고 그 結果는 어제부터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 報告될 예정입니다. 정식보고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간 紙上을 통해서 알려진 것 만으로도 北韓에 核再處理施設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는 北韓 核問題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南北 相互查察規定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南北交流·協力を 留保하겠다는 立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연구원은 政策代案 開發의 次元에서 핵문제에 대한 北韓의 立場을 分析·評價하고 그 토대위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實踐·履行與否를 展望하는 한편, 핵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기본합의서」 이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南北關係의 향후 展開方向을 예측·토론하는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學術會議가 北韓의 핵문제 해결과 南北關係 進

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출하는 동시에 참신한 政策代案들이 발굴될 수 있는 유익한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斯界의 專門家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高見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學術會議에서는 저희 研究院의 研究陣들이 論文을 발표하고 외부학자·전문가들의 高見을 듣는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叱正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人事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6. 16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乘龍

# 第1會議：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1. 主題發表 …………… 全 星 勳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2. 討 論

- 司 會：河 英 善 (서울大 教授)
- 討 論：南 晚 權 (KIDA 軍備統制研究센터 所長)  
李 春 根 (世宗研究所 研究委員)  
趙 青 遠 (科技處 原子力協力課長)

빈 면

#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韓半島 非核化 展望

全 星 勳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I. 序 論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開發 問題가 한반도 뿐 아니라 東北亞의 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1985년 12월 「核武器擴散禁止條約」(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하였으나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安全協定을 6년간이나 미루어 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으로 대내외 여건이 불리하게 조성되고 핵사찰 수용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어지자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IAEA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1992년 4월 9일 이를 비준하였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國際核査察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제재결의안을 수행하면서 드러났듯이 핵무기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IAEA의 安全檢査(safeguards inspection)도 불충분한 제도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은 한국 뿐 아니라 國際社會의 보다 철저한 대응



을 촉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남북한간에 제시된 핵관련 제안들을 통해 核問題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핵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전망함과 아울러 韓半島의 진정한 非核化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발족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협상에서 남북한이 查察對象과 方法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핵사찰문제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공적인 履行 與否를 가능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핵사찰문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II.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핵무기 개발 부인」 및 핵사찰과 관련하여 「非對稱查察과 疑心同時解消 原則」으로 요약될 수 있다.

### 1.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북한은 남한에 駐韓美軍 보유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a nuclear weapons free zone: NWFZ)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북한이 反核 입장을

최초로 공식 표명한 것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sup>1)</sup> 구체적인 非核地帶化 주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구체적 실천조치를 제시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제의하면서<sup>2)</sup> 시작되었다. 이후 북한은 남북한간 신뢰구축이나 軍縮方案을 제의하면서 항상 駐韓美軍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를 거론하였다.<sup>3)</sup>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非核地帶化 제안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1990년 5월 31일 발표된 軍縮案에서 북한은 10개항의 신뢰구축 및 군축방안을 제시하였다.<sup>4)</sup>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1) 남한내의 모든 核武器가 즉각 철수되도록 공동 노력할 것, (2) 핵무기의 생산·구입 금지, (3)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내 통과·진입 금지를 實踐方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1991년 7월 30일 북한은 남북한이 1992년말까지 비핵지대화를 선언하고 1993년말까지 주변의 核保有國들로부터 비핵지대화의 지위를 보장받을 것을 제의하였다.<sup>5)</sup>

---

1) 북한의 反核 입장을 보여주는 최초의 공식기록은 1956년 11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한 국회와 국민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에서 북한은 한국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로동신문」, 1956년 11월 8일자.

2)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자.

3) 예를 들어 1988년 11월 7일 발표된 軍縮案에서 북한은 1989년말까지 駐韓美軍과 核武器를 북위 35도 30분까지 철수하고 1990년말까지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 243.

4) 「로동신문」, 1990년 6월 2일자.

5) 「로동신문」, 1991년 7월 30일자.

韓半島 核問題는 1991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며 IAEA 안전검사 수용을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와 연계시켰다.<sup>6)</sup> 북한은 「비핵지대화 선언」 초안에서 (1) 核武器의 실험·생산·반입·보유·사용 금지, (2) 핵무기 탑재 가능 비행기와 함선의 한반도 출입·통과·방문 금지를 규정하였다. 또한 (3) 核雨傘을 보장하는 조약 체결과 핵무기의 저장·배치를 금지하고, (4)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도 금지하였으며, (5) IAEA의 북한 核施設에 대한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내 軍事基地 사찰의 동시실시를 주장하였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입장은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이 타결되면서 수정되는 듯한 조짐을 보였다.<sup>7)</sup>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대통령의 「戰術核 減縮宣言」과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韓半島內 核不在 宣言」으로 주한미군의 핵철수가 사실상 시인된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에서 그들이 종래 주장해 온 核雨傘保障協定 금지나 핵무기 탑재가능 비행기나 함선의 출입·통과·방문 금지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제안 명칭에도 「非核地帶化」 대신 「非核化」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6) 연형목 총리 기초연설문, 「로동신문」, 1991년 10월 24일자.

7)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非核8原則, (2)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에너지를 이용, (3)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4) 非核化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5)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전술적인 변화였을 뿐 비핵지대화 주장을 통해 성취하려던 戰略的 目標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들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후의 북한 태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우선 「非核化 共同宣言」 협상 당시에도 북한은 핵무기의 「搬入」 금지를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북한의 「搬入」 금지 주장은 駐韓美軍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결국 「搬入」 대신 「接受」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선에서 쌍방이 타협했지만 이는 북한이 언제라도 駐韓美軍의 존재를 한국의 核武器 접수로 연계시켜 주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한은 또한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구성·운영을 위한 협상에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核威脅을 공동으로 저지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을 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의하였다.<sup>8)</sup> 핵통제공동위원회 출범 이후의 협상에서도 북한은 외국군대의 核武器 저장·배비와 영토 출입 금지,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군사훈련·작전 금지, 핵무기 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 체결 금지 등 「非核化 共同宣言」 합의시 철회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非核地帶化」임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

8) 남북한은 1992년 3월 14일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非核化 共同宣言」의 이행에 관한 부속문건 채택·처리, (2) 정보교환, 사찰단의 구성·운영, (3) 사찰대상 선정, 사찰절차와 방법 합의, (4) 사찰후 시정조치 합의·이행, (5)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사찰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

## 2. 核武器 開發 否認

核武器 開發 가능성에 대한 북한 당국자의 공식적 견해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77년 10월 김일성과 日本 NHK-TV 논설위원 장과의 대담에서였다.<sup>9)</sup> 김일성은 韓半島는 대단히 협소하여 核武器 사용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核에너지는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1991년 9월 26일 김일성과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과의 대담이 있기 전까지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북한 당국자의 논평은 전무하였다. 이와나미 서점 사장이 제기한 북한의 國際核査察 수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일성은 북한이 朝鮮半島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하였다.<sup>10)</sup>

核武器 開發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에 대해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북한의 원칙적인 주장은 1992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도 되풀이 되었으며,<sup>11)</sup>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2.18~21)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담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12)</sup>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될 合意書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며 북한측의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한 盧泰愚 大統領의 성명에

---

9) 李基鏢,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서울: 日新社, 1988), p. 453.

10) 「로동신문」, 1991년 11월 11일자.

11) 김일성은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핵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1월 1일자.

12) 김일성, “북과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가자,” 「로동신문」, 1992년 2월 21일자.

대한 답례형식의 발표문에서 김일성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고 천명하였다. 김일성은 또한 북한은 주변의 큰 나라와 核對決을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동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1992년 3월 19일 개최된 제1차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회의와 1992년 4월 12일 김일성이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紙와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표명되었다. 특히 워싱턴타임스紙와의 기자회견에서 김일성은 북한은 어떤 핵무기도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하였다.<sup>13)</sup> 그는 또한 強大國들이 수천, 수만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마당에 한 두개의 핵무기를 생산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북한에는 核武器 運搬手段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3. 非對稱查察과 疑心同時解消 原則

1991년 7월 15일 核安全協定에 가서명함으로써 IAEA에 의한 핵사찰 실시 가능성이 보다 분명해지자 북한은 IAEA에 의한 북한의 民間核施設<sup>14)</sup> 사찰을 조건으로 북한에 의한 남한내 군사기지 사찰실시라는 非對稱查察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非對稱查察問題가 북한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91년 9월 26일

---

13) *The Washington Times*, April 15, 1992; 「로동신문」, 1992년 4월 18일자.

14)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民間核施設”은 軍事施設에 대한 相對概念으로서 IAEA의 一般查察 對象을 의미한다.

김일성과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과의 대담에서였다.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對北韓 國際核査察問題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핵사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핵사찰 그 자체인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국제적 정의를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서만 핵사찰을 강요하려고 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 남조선에 현실적으로 1,000여개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핵사찰을 공정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있는 핵기지에 대해서도 응당 하여야 합니다.<sup>15)</sup>

이후 북한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며 IAEA에 의한 北韓核施設 査察과 북한에 의한 남한내 군사기지 사찰의 동시실시를 주장하였다.<sup>16)</sup> 북한은 또한 1991년 11월 25일 핵안전협정 체결에 관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의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定着에 관한 宣言」(1991.11.8)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한미군 핵무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과 북한의 핵시설 사찰의 동시실시를 거듭 주장하고 이를 위한 朝·美 협상을 촉구하였다.<sup>17)</sup>

---

15) 「로동신문」, 1991년 11월 11일자.

16) 「로동신문」, 1991년 10월 24일자.

17) 「조선중앙방송」, 1991년 11월 25일자; 1991년 12월 6일 북한의 전인찬 비엔나주재 국제기구대표부 대사도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核査察은 IAEA가 할 일이지만 駐韓美軍의 핵무기 철수여부에 대한 사찰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구체적 방법과 대상 등을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中央日報」, 1991년 12월 8일자; 미국의 솔라즈(Stephen Solarz)의원 訪北時에도 북한은 非對稱査察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朝鮮日報」, 1991년 12월 23일자.

한편 북한은 노태우 대통령의 「韓半島內 核不在 宣言」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남조선 당국자의 말만으로는 핵무기 철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IAEA 사찰 수용 시 駐韓美軍 핵무기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sup>18)</sup>

북한이 주장해 온 IAEA에 의한 북한 핵시설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내 군사기지 사찰의 非對稱查察 개념은 다음 두 가지 사건의 영향을 받아 다소 변화하게 된다. 첫째,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1991.12.10~13)에서 한국은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남북한 쌍방의 민간핵시설 對 민간핵시설, 군사시설 對 군사시설의 對稱查察을 제의하고 이를 위한 시범조치로서 우선 쌍방의 군사시설과 민간핵시설 각각 한 곳씩에 대한 「示範查察」을 제의하였다.<sup>19)</sup> 둘째, 북한이 1992년 1월 30일 核安全協定에 서명함으로써 협정의 조기 비준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IAEA에 의한 북한 민간 핵시설 사찰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의 영변을, 북한은 남한의 모든 軍事基地를 사찰하는 식으로 되어야 한다면서 수정된 非對稱查察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북한은 그들의 수정된 非對稱查察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해 제 1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부터 「疑心同時解消 原則」을 주장

---

18) 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1년 12월 23일자.

19) 정원식 총리 기조연설문, 「남북대화: 제54호」(서울: 통일원, 1992), pp. 56~57.

20) 「한국일보」, 1992년 2월 20일자.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의심동시해소 원칙」은 서로의 의심을 해소하되 북한에는 없는 핵무기와 核基地가 남한에는 존재했고 민간핵시설의 경우에도 남한이 숫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査察과 남한의 군사기지에 대한 全面的인 同時査察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Ⅲ. 南北韓 相互核査察 協商 展望

#### 1. 協商의 障礙要因

남북한 相互核査察 협상의 장애요인은 核査察에 대한 남북한 입장차이와 북한의 軍事的 開放 거부 태도로 요약될 수 있다.

#### 가. 核査察에 대한 南北韓 立場差異

이제까지 남북한 상호핵사찰과 관련하여 쌍방이 표방한 입장은 북한의 「疑心同時解消 原則」에 입각한 非對稱査察과 한국의 「相互同數 原則」에 의거한 對稱査察 및 特別査察 實施로 요약될 수 있다.

<도표 1> 核査察에 대한 南北韓 立場比較

	北 韓	韓 國
사찰 대상 선정 방법	민간핵시설 군사시설	민간핵시설 군사시설
사찰추진 원 칙	疑心同時解消 原則	相互同數 原則
특별사찰	不 可	必 須

———— 북한(非對稱査察)

----- 한국(對稱査察)

<北韓의 非對稱査察 對 韓國의 對稱査察>

<도표 1>에서 보듯이 남북한은 査察對象 選定問題에 관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17년째 IAEA의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한국은 북한의 非對稱査察 주장을 일축하고 민간핵시설 對 민간핵시설, 군사시설 對 군사시설의 對稱査察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査察對象이란 해당 장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한국에 核武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IAEA에 이미 공개된 민간핵시설을 외부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 軍事基地와 사찰대상으로 교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 <北韓의 疑心同時解消 原則 對 韓國의 相互同數 原則>

사찰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쟁점은 북한이 「疑心同時解消 原則」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쌍방의 연간 사찰대상수가 동일한 「相互同數 原則」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 「相互同數 原則」에 입각한 相互査察規定을 제시하며 남북한이 定期査察과 特別査察을 통해 연간 총 56개 범위내에서(이중 군사시설은 20개) 사찰을 실시하도록 제의하였다. 定期査察 대상은 상대측이 선정한 핵관련 장소로서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연간 4회 실시될 수 있다. 特別査察은 불시에 어느 一方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 연간 12회 실시되며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사찰만이 실시될 수 있다.

#### <特別査察>

한국은 제1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一方이 사찰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하는 特別査察을 제의하였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을 풀고 信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찰을 원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사찰대상을 지정하고 상대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 特別査察制度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sup>21)</sup> 북한은 特別査察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

21)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정원식 총리 기초발언문.

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비핵화 공동선언」(제4항)에 위배된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 나.北韓의 軍事的 開放 拒否 態度

核査察이나 軍備統制 檢證의 핵심은 결국 규제대상 시설이나 무기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근본적으로 開放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사찰 협상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sup>22)</sup>

북한이 얼마나 軍事的 開放에 부정적이냐 하는 사실은 「남북사

---

22) 核査察은 군비통제 검증방법 분류상 收檢國의 주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現場檢査에 해당된다. 현장검사의 수용여부는 收檢國의 체제개방 정도와 직결되어 있다. 美·蘇間 군비통제 역사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후반 미·소 양국은 「全面核實驗禁止條約」(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이 협상의 최대 쟁점은 현장검사의 수용여부였다. 미국은 보다 많은 현장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소련은 주권침해 소지와 간첩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극히 제한된 현장검사만을 허용할 입장을 보였다. 양측이 연간 현장검사 수용 횟수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 전면핵실험금지조약」 대신 현장검사의 필요성이 덜한 「部分核實驗禁止條約」(The Partial Test Ban Treaty: PTBT)이 체결되었다. 이후 현장검사에 대한 미·소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소련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때까지 계속된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후 여러가지 군비통제 조약 체결을 재의하였으며 그의 改革과 開放政策은 검증 특히, 현장검사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변화로 1986년 9월 「스톡홀름 협약」(The Stockholm Document)이 체결될 수 있었다. 스톡홀름 협약은 현장검사가 검증방법으로 채택된 최초의 중요한 군비통제 조약이다. 그러나 이 협약의 협상에서도 현장검사가 협상타결 마지막까지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군비통제 조약체결시 현장검사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을 잘 보여 준다.

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의 南北不可侵 부문에서 南北軍事共同委員會의 소관임무를 합의하는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한은 주요 군사이동과 훈련의 상호 통보 및 통제를 비롯한 5개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參觀團 초청은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軍事施設에 대한 북한의 開放拒否 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지난 40년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를 지속해온 북한은 체제유지 및 國家安保와 직결되어 있는 軍事分野의 開放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軍事力이 人的·技術的 側面에서 남한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특히 남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허상이 무너질 경우 북한은 南北對話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吸收統合의 실현을 우려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北韓軍內의 거부감이다. 적대논리에 입각하여 교육받은 북한군에게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인 남한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軍事訓練을 참관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2. 協商의 促進要因

남북한 相互核査察 협상의 촉진요인은 對外的 및 對內的 促進要因으로 나누어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가. 對外的 促進要因

상호핵사찰 협상의 對外的 促進要因은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壓力이다. 미국은 북한의 核開發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하에<sup>23)</sup>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와 IAEA 핵사찰을 미·북한 關係改善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온 미국은 북한이 IAEA 核安全協定에 서명함으로써 國際核査察을 수용하게 되자 남북한 상호사찰 실현을 관계개선의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sup>24)</sup> 미국은 이라크에서 볼 수 있듯이 IAEA 사찰이 명백한 限界를 갖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보다 확실하게 북한의 核開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相互査察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sup>25)</sup> 미국은 또한 북한이 상호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한 상호사찰이 駐韓美軍 減縮의 중요 前提인

---

23) 美·日 외무장관 회담시 베이커(James Baker) 미국무장관 발언, 「한국일보」, 1991년 11월 12일자; 체니(Dick Cheney) 미국방장관 美上院 예산위원회 발언, 「朝鮮日報」, 1992년 2월 6일자.

24) 예를 들어 솔로몬(Richard Solomon)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IAEA 사찰과 南北相互査察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기적인 미·북한간 高位級會談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朝鮮日報」, 1992년 5월 21일자; 미국무부는 1992년 6월 2일 공식논평을 통해 IAEA 사찰과 남북한 相互査察을 병행하는 것이 한반도 핵위협 제거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보장이며 신뢰있는 상호사찰이 이행될 때 미·북한 關係改善이 진전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이러한 관심사가 해결되면 상호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담당자급 대화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2년 6월 3일자.

25) 레만 미군축처장은 어느 査察이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核開發을 지

을 분명히 하고 1993년도 한·미 연례합동군사훈련의 재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미국의 對北韓 강경입장은 단지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레만(Ronald Lehman) 미군축처장의 다음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얻어진 경험이 中東이나 南아시아와 같은 기타 지역에 유용한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한은 같 길이 멀지만 核問題에 관해 서울과 평양이 이미 취한 행동조차 취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 核과 관련한 信賴構築이 보다 더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대치하고 있는 南아시아이다.<sup>27)</sup>

레만의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南北韓間에 강력한 相互査察 실시를 국제적인 본보기로 사용하여 核擴散이 우려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相互査察體制를 수립한다는 기본구도하에 남북한 상호사찰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북한의 核武器 개발 포기과 IAEA 핵사찰을 조·일수

---

연시킬 수는 있으며 한국이 제시한 査察方案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협상에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있어야 相互査察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상호사찰 실시를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 Ronald Lehma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韓半島 軍縮 4個國 學術會議」(서울: 1992년 6월 2일).

26) 리스카시(Robert W. RisCassi) 주한미군사령관의 星條紙 기자회견 발언, *The Korea Herald*, June 2, 1992.

27) Ronald Lehma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pp. 24~25.

교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다.<sup>28)</sup> 일본은 북한의 IAEA 安全協定 서명 이후 남북한 상호사찰 실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sup>29)</sup>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럽 각국의 관심도가 낮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선진국(G7)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주요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이러한 상황속에서 外交的 孤立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對日修交와 對美關係改善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은 미·일 양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 나. 對內的 促進要因

남북한 양측도 교착상태에 빠진 核査察 협상이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원치 않으며, 이를 위해 핵사찰문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1992년 5월 27일 제5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가 결렬된 후 한국은 남북한 相互査察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實質的 進展이 어렵다는 입장하에 대북한 합작·투자 사업을 보류하고 일체의 북한 방문을 불허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分科委 접촉 등 남북한 접촉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28) 와타나베 일본외상은 북한의 核安全協定 조기체결, 核査察 무조건 수락 등이 日·北韓 관계정상화의 절대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中央日報」, 1992년 11월 7일자; 미야자와 일본총리도 북한과의 國交正常化는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확인하였다. 「朝鮮日報」, 1992년 1월 15일자.

29) 제7차 조·일 수교회담에서 나카하라 일본대표는 북한이 IAEA 査察과 함께 「비핵화 공동선언」을 토대로 한 相互査察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겨레신문」, 1992년 5월 14일자.

30) 「中央日報」, 1992년 6월 8일자.



분명히 하고 있다.<sup>31)</sup>

한편 북한은 核協商 실패의 책임이 남한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이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국이 南北對話 재점검과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제6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날짜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확정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으며, 核査察 協商은 결렬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6월 16일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sup>32)</sup>

### 3. 協商 展望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IAEA 사찰과<sup>33)</sup> 달리 현재 진행중인 相互核査察 협상은 협상의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개진된 남북한 양측의 입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對內 外的 協商 促進要因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시간은 걸릴지라도 중

---

31) 「中央日報」, 1992년 6월 1일자; 한편 이동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변인은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유엔 安保理를 통한 對北 強制 査察 실시 검토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朝鮮日報」, 1992년 6월 2일자.

32)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담화, 「평양방송」, 1992년 5월 30일자; 연형묵 총리 전통문, 「한겨레신문」, 1992년 6월 5일자.

33) 북한은 1992년 5월 4일 그들의 核施設 및 核開發 現況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였고, 1992년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최초보고서에 대한 臨時査察(ad hoc inspection)이 실시되었다. 북한은 예정대로라면 7월 9일까지는 IAEA와 세부적인 사찰방식을 규정하는 「보조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7월 10일부터는 一般査察(routine inspection) 실시도 가능해질 것이다.

국에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상호핵사찰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 내용은 査察 對象 및 方法 選定과 관련하여 사찰 실시 형식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민간핵시설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국내 軍事施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相互同數 原則」에 의거한 對稱査察과 북한의 「疑心同時解消 原則」에 의거한 非對稱査察이 절충되는 것이다. 즉 전체적인 동수원칙에 입각하여 민간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동시에 사찰하되, 북한에 대해서는 민간핵시설 중심,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중심의 사찰이 실시되는 방향에서 타협될 것으로 보인다. 軍事施設의 지나친 노출 가능성 때문에 北韓 軍部の 반대가 예상되지만 군사시설에 대해 제한된 사찰이 실시된다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査察方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제안과 같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定期 및 特別査察을 모두 실시하고 軍事施設에 대해서는 특별사찰만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특별사찰을 함께 실시하되 軍事施設에 대한 特別査察은 제외되는 것이다. 셋째, 特別査察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가능성 중,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수정없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한국 또한 특별사찰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번째 가능성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이 軍事施設 開放 거부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의 군사시설 사찰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사찰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사찰만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위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서의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남북한 核協商 問題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相互査察이 그 내용보다는 실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象徴的 意義를 갖는 실속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하여 核開發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게 될 경우, 상호사찰 수용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명분이 약화되는 반면, 북한의 입지가 역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바로 이것이 韓半島 核問題에 대한 현단계 북한의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國際核査察을 적절히 이용하여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상호 핵사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북한의 의도는 特別査察 문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은 IAEA에 의한 사찰을 받기도 전에 IAEA에 제출된 보고서에 없는 시설도 IAEA가 원하면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IAEA 특별사찰 수용 의사를 표명하였다.<sup>34)</sup> 이는 북한이 상대방이 요청한 후 24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한국의 特別査察 요구를 희석내지는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실시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

34) 訪北중인 카아네기 재단 연구원들과의 면담에서 김영남 북한외교부장은 “IAEA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 원한다면 최초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시설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S. Harrison, L. Spector and J. Leonard, *Preliminary Report: Carnegie Endowment Delegation Visit to Pyongya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9, 1992, p. 2; 전인찬 비엔나 주재 북한대사도 같은 발언을 하였다. 「中央日報」, 1992년 5월 8일자.

## IV. 韓半島 非核化 實現의 課題

남북한이 상호사찰에 합의하더라도 이는 단지 韓半島의 非核化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非核化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효과적인 査察制度 確立, (2) 북한의 非核地帶化 主張 철회, (3) 북한체제의 開放, (4) 한반도 및 동북아 軍事的 信賴構築, (5) 남북한 核活動의 透明度 증대.

### 1. 效果的인 査察制度 確立

남북한은 IAEA 사찰 수용과 더불어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相互核査察 실시를 위해 협상중이다. 앞에서는 協商의 爭點이 되고 있는 사찰대상 및 방법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사찰실시 형식의 측면에서 협상타결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으나,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査察內容의 측면에서 남북한 상호사찰이 IAEA 사찰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라크가 IAEA 安全檢査를 위반하여 비밀리에 核開發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남북한 핵사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IAEA 핵사찰제도의 기본 가정은 “非敵對的”(non-adversarial)인 사찰 실시이다.<sup>35)</sup>

---

35) Lewis Dunn and Amy Gordon, *On-Site Inspection for Arms Control Verification: Pitfalls and Promise* (McLean, Virginia: The Center for National Security Negotiations, 1989), p. 12.

비적대적 사찰이란 收檢國의 주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收檢國이 제출한 자료에 부분적으로 의존하여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687호에 의거한 대이라크 핵사찰 실시전까지 IAEA는 收檢國이 검사대상으로 공개한 시설과 물질 (declared facilities and materials)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해 왔다. 바로 IAEA의 이러한 관행에 연유하여 IAEA 사찰제도는 조약위반을 전제로 이를 探知하는 장치가 아니라 조약준수를 전제로 이를 立證하는 신뢰구축에 중점을 둔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IAEA 사찰이 非敵對的이라는 점은 운영 및 예산상의 문제와 더불어 NPT에 가입하여 핵사찰을 받는 벨기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등 선진산업국들의 요구에도 기인한다.<sup>36)</sup> 발전된 核技術과 핵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선진국들은 IAEA 安全檢査에 따른 비용증대와 더불어 사찰요원들이 사찰과정에서 얻은 산업기밀을 누출시킴으로써 야기될 核輸出市場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였다.

IAEA 사찰의 비적대적 특성은 全面安全措置協定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찰제도를 20년이상 유명무실하게 방치해 온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2년 2월 24~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

36) George Bunn, "Does the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quires its non-nuclear-weapon members to permit inspection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of nuclear activities that have not been reported to the IAEA?" *CISAC Working Paper*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Stanford University, May 1992), p. 1.

IAEA는 特別査察 權限을 확인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결의하였다.<sup>37)</sup> 이라크에서 실패를 경험한 IAEA는 제2의 이라크가 발생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와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對北韓 査察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 査察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 핵사찰은 IAEA 安全檢査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up>38)</sup>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 상당량의 천연우라늄 자원을 보유하고 정련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므로<sup>39)</sup> 우라늄광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천연우라늄이 정련된 상태인 옐로우케익(yellow cake)은 檢査對象이 되어야 한다. 정련된 우라늄 출하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정련시설에 대한 常駐監視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未申告 核施設과 核物質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효과적인

---

37) Jon Wolfsthal, "IAEA to Implement 'Suspect Site' Inspection Powers,"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2 (March 1992), p. 27.

38) NPT 非加入國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IAEA 사찰과 관계없이 相互 核査察을 실시해 오고 있다. 1991년 7월 18일 양국은 핵물질과 시설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핵무기의 試驗·使用·製造·生産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또한 핵물질이 조약에서 금지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기구로서 「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질 관리 및 통제 위원회」(Brazilian-Argentine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를 설치하였다.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News-brief*, no. 15 (Autumn 1991), p. 2.

39) 북한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평산, 정신, 희천지구에 우라늄광이, 평산과 박천지구에 우라늄 정련시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양방송」, 1992년 4월 11일자.

인 정보수집 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sup>40)</sup> 남북한은 인공위성 등 고도의 원거리 정보수집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 상업용 인공위성(예: 프랑스의 SPOT 위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은<sup>41)</sup> 「非核化 共同宣言」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이 시설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가동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IAEA 사찰관이 常駐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sup>42)</sup> 시설 폐기전까지 한국의 사찰팀도 현장에 상주해야 할 것이다.

---

40) 정보획득 능력의 한계로 인해 IAEA가 未申告 核施設과 核物質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特別查察制度를 활용할 수 없는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 한스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도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개발시설 발견에는 미국 등 IAEA 회원국이 제공한 첩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9 (November, 1991), pp. 3~6.

41) 북한 원자력공업부의 최종선 국장은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 실험이 실시되었으며 극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였다고 말하였다. S. Harrison, L. Spector and J. Leonard, *Preliminary Report: Carnegie Endowment Delegation Visit to Pyongya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5; 제7차 조·일 수교회담에서 이삼로 북측단장도 같은 발언을 하였다. 「朝鮮日報」, 1992년 5월 15일자; 한편 지난 5월 11~16일 북한을 방문한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현재 영변에 건설 중인 放射化學實驗室은 核再處理施設에 해당되며, 그 동안 플루토늄이 추출되었으나 지금까지 추출된 양은 핵무기를 만들기에 불충분한 양이라고 언급하였다. 「朝鮮日報」, 1992년 5월 17일자.

42) Lewis Dunn and Amy Gordon,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The New Role of On-Site Inspection: Challenges, Issues and Realities* (Lexington: Lexington Books, 1990), p. 48.

## 2. 北韓의 非核地帶化 主張 撤回

북한의 「非核地帶化」 주장은 한국의 「非核化」<sup>43)</sup>와 달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의 非核地帶化 提議는 규제사항이 매우 포괄적이다. 기존의 비핵지대화 조약이 규정하는 핵무기의 實驗·生産·搬入·保有·使用 금지 등의 일반적인 非核原則과 더불어 북한은 핵무기 탑재 가능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출입·통과·방문도 금지하고 있다.<sup>44)</sup> 둘째,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안은 핵무기의 貯藏·配置, 核雨傘을 보장하는 조약의 체결 및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지위를 주변의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國際的으로 保障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核雨傘保護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우방국의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하에

---

43) 한국의 비핵화 정책은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定着에 관한 宣言」(1991. 11.8)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의 製造·保有·貯藏·配備·使用 금지의 非核5原則, (2) NPT와 IAEA 안전협정의 성실한 이행, (3) 핵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보유 금지, (4) 기타 大量殺傷武器의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44) 「중남미 비핵지대화 조약」(The Treaty of Tlatelolco)은 核武器의 영토 통과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조약」(The Treaty of Rarotonga)도 이 문제를 조약가맹국 각자가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만이 國內法으로 핵무장·핵추진 함정이 자국 領海에 들어오거나 핵무기 탑재 항공기가 영토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駐韓美軍 보유 핵무기 철수와 한·미연례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안보협력관계의 와해와 駐韓美軍의 철수까지도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양측의 核政策이 동일함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철회했던 「비핵지대화」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南北關係 진전에 장애요인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3. 北韓體制的 開放

體制開放에 거부적인 북한의 태도는 남북간의 진정한 信賴構築과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 뿐 아니라 남북간에 상호 교류·협력분야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開放拒否의 姿勢는 북한이 상호핵사찰 협상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온 요인중의 하나라고 분석되며,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진정한 非核化의 實現은 요원할 것이다.

### 4. 韓半島 및 東北亞 軍事的 信賴構築

韓半島의 非核化는 남북한 및 동북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相互不可侵을 합의하였으며 1992년 3월 18일 南北軍事共同委員會를 발족시켰다. 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불

가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해 나가게 된다.<sup>45)</sup> 남북한간의 軍事的 信賴構築과 韓半島의 非核化는 어느 하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서는 다른 하나의 성공적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속에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진정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남북사이의 緊張緩和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중·일·러가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의 多者間 信賴構築 및 군비통제 방안이 합의될 경우 이는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5. 南北韓 核活動의 透明度 增大

남북한 핵사찰과 관련하여 軍備統制 檢證의 중요한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그 원칙은 어떠한 군비통제 조약에서도 100% 완벽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효과적인 査察制度에 합의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인 韓半島 非核化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반도 핵문제 논의의 초점은 강력한 핵사찰 실시에 모아져 있으나 핵사찰은 북한의 核開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46)</sup> 북한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하기 시작한 현시점에 우리는

---

45)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를 협의한다: (1) 대규모 部隊移動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2) 非武裝地帶의 평화적 이용, (3)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4)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段階的 軍縮實現, (5) 檢證.

46) 현재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 실행기관인 유엔특별위원회(United

응급조치와 아울러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연구 및 개발(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에 대한 투명도 증대를 위해 남북한간에 平和的 核利用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의 核開發을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일방의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 현재 남북한 核協商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남북한은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에 브라질-아르헨티나간에 설치된 합동통제기구와 같이 양국의 핵물질과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원자력기술 및 자원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sup>47)</sup> 이러한 노력은 情報

---

Nations Special Commission: UNSCOM)에서 활동중인 핵물리학자 도렌(David Doren) 박사는 이라크에서와 같은 強制核査察이 실시되어도 비밀리에 核武器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은 국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992년 3월 11~14일 캐나다 몬테벨로(Montebello)에서 개최된 캐나다 외무부 주최 「제9회 오타와 검증 심포지움」에서 필자와의 의견 교환. 또한 核再處理施設을 지하에 건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북한이 매우 소규모의 재처리시설을 지하에 건설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증거를 포착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 47) 남북한은 이미 平和的 核利用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총회(1991.9.17)에서 북한이 IAEA 核査察을 수용할 경우, 平和的 目的의 원자력기술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최우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도 일본 환태평양연구소 주최 「韓半島 統一問題 심포지움」에서 핵사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면 남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겨레신문」, 1992년 5월 20일자.

交流 및 相互協力の 制度化를 통해 북한의 핵산업 및 연구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파악함으로써 북한의 핵관련 활동의 透明度를 증대하고 핵무기개발 의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더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3국에 비밀로 하는 IAEA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직접 북한의 핵活動 現況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남북한 양측은 우선 核査察 협상과 관계없이 自國의 핵활동에 관하여 최소한 IAEA에 제공되는 만큼의 자세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합의해야 할 것이다.

## V. 結 論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남북한 核協商의 현황을 검토하여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진행중인 相互 核査察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다.

북한의 核開發 의혹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非核地帶化」 주장에 맞서 「非核化」를 내세우며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고자 미·일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 1992년 3월 14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 및 1992년 5월 25일 북한의

IAEA 임시사찰 수용 등의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

남북한 相互核査察은 쌍방의 현격한 입장차이와 북한의 군사적 개방 거부태도 등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협상 촉진 요인에 비추어 볼 때, IAEA 사찰과는 별도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의 「相互同數 原則」에 입각한 對稱査察과 북한의 「疑心同時解消 原則」에 의거한 非對稱査察이 절충된 타협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韓半島의 진정한 非核化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보다 효과적인 사찰제도 마련과 핵활동의 透明度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軍事的 信賴構築協商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그들의 체제를 개방하는 것이 韓半島 非核化의 요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第1會議 討 論

하 영 선 교수(사회): 이 회의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회의준비 실무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IAEA의 북한 核査察 결과가 공개되는 6월 15, 16일쯤 회의를 가지면 그 때는 문제가 다 잘 풀려서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예상한 대로 韓半島 核問題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總體的인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 실무차원에서 그리고 言論界, 學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韓半島의 核 또는 북한 核問題의 二重的 性格 때문이다. 즉 첫째, 핵문제는 고도의 기술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서 상식적인 차원의 接近方法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客觀的 評價가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으며, 둘째로 이는 단순히 핵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남북한간, 한·미간 고도의 政治·軍事的 次元의 어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核技術的 專門性과 國際政治的인 專門性을 동시에 조명해야만 문제의 性格이나 對應方案이 모색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複合的 性格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技術的 專門性과 국제정치·군사적 차원에서 專門性을 지닌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셨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통해 다른 어느 회의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客觀的 性格과 합리적인 對應方案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인이 보기에 국내 관계기관들은 북한 核施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相衝되는 입장을 취하지 않나 여겨지며, 國內外 言論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報道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核水準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대응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여러가지로 미묘한 시점에서 전박사가 核問題에 대한 북한의 입장, 相互査察에 대한 남북한의 立場 差異와 展望,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韓半島 非核化를 위한 條件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해 간략하고 체계있는 발표를 해 주셨다.

토론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오늘 토론에서 최근 IAEA 보고와 연관해서 북한 핵시설의 軍事的인 轉用 또는 活用可能性에 대한 客觀的 評價問題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야 보다 현실적인 對應方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회의는 세 분 토론자께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과 개인적 견해를 각 10분씩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전성훈 박사의 답변, 일반토론의 순서로 진행하겠다. 그럼 남만권 박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남 만 권 박사(지정토론):** 전박사가 韓半島 非核化 실현과제에 대하여 相互査察問題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발표해 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 특히 한반도의 진정한 非核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 점은 매우 신선하고 發展的인 提

案으로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국제적인 압력수단에 의하지 않고 相互信賴의 바탕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매우 인상적인 것이다. 발표내용 중 많은 부분이 原則的인 면에서 본인의 의견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로 북한 核問題의 解決方案에 대해서 발표자와 다소 시각을 달리하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전박사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核武器開發 否認」, 「非對稱查察」과 「疑心同時解消原則」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설명을 제시하였으나, 각 주장별로 북한의 意圖分析에 중점을 둔 事實分析(fact analysis)이 좀 더 첨가되었다면 북한의 核實體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응책 모색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핵개발 眞僞問題와 관련, 이에 대한 발표자 자신의 평가, 즉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단순히 疑惑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實體로 보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본인은 북한이 분명히 核開發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그 성격상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對北協商 과정에서 타결이 용이하지 않은 상호사찰문제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것은 短期的인 觀點에서는 再考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IAEA가 실시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臨時查察 結果報告는 북한이 명백하게 核을 개발중에 있으며, 이미 核再處理能力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번 IAEA 사



찰이 臨時査察임에도 불구하고, IAEA가 寧邊 放射化學實驗室을 재처리시설로 단정한 점에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찰에서는 방사화학연구소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再處理裝備인 2개의 핫셀(hot cell)을 完備하고 있고, 核燃料貯藏室에 핵연료 잔해물을 보관할 물을 채우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燃料供給用 지하터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보다 강력한 對應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선정과 관련해서는 實效性을 고려하여 단기적·중기적·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표자가 제시한 査察制度의 협상, 信賴構築, 體制開放, 남북 核活動의 透明度 증대방안 등은 현재의 남북관계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원칙적·평화적·협조적인 성격이 강한 방안들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안들은 북한의 對南政策과 核政策의 근본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는 중·장기적 차원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政府次元에서 보다 시급히 그리고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政治·軍事的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인은 核問題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관련, 김일성이 북한의 體制維持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核開發 뿐이며,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절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본다. 즉 북한은 1~2년만 현 체제를 유지하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후 對內經濟問題와 對外關係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IAEA 핵사찰 수용 등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일련의 태도 변화는 핵 문제로 인한 國際的 壓力과 外交的 孤立을 탈피하기 위한 일종의 戰術的인 變化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내 일부에서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남북간 平和共存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으며, 유엔동시가입,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IAEA 핵사찰 수용 등은 사실상 對南政策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對南戰略이 變化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根據는 없으며, 만약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하였다면 북한은 적어도 남북간 자유로운 人的 交流 허용, 기습공격형 前方推進部隊의 後方 再配置, 핵무기 개발 포기선언, 그리고 強制査察 허용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냉철히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변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변화되었거나 또는 變化 徵兆가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 核開發에 대응과 관련, 먼저 북한의 核武器 開發 목적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目的으로는 핵무기 보유에 따른 정치·외교적 지위 격상, 駐韓美軍 및 주한미군 보유 核武器 제거를 위한 協商能力 제고, 핵무기관련 기술 및 장비의 輸出,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보복시 抑止手段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며, 북한이 남북간 협상에 의해서 相互査察을 순순히 받아들이거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誤算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남북간 협상을 통해 평화적·협조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短期的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제시한 북한의 핵연구·개발 활동의 透明度 증대라든가 남북한간 平和的 核利用 協力方案 모색은 북한의 근본적인 核政策에 변화가 없는 한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다각도의 國際的 壓力行使가 북한체제 자체의 威脅이 될 만큼 現實化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굴복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IAEA 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당분간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國際的 制裁措置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북한은 이 기간동안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對日修交協商을 진척시키고 對美協商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최대한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한편, 한국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平和 攻勢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實踐 對策으로는 強制査察 적용을 위한 南北協商과 國際的 壓力도 중요하지만, 이번 IAEA 핵사찰로 드러난 북한의 재처리시설의 폐기 및 核開發拋棄 유도에 정책의 重點을 두고 정부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모든 對北壓力手段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관련, 국제적 차원의 압력행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미·일과 긴밀한 政策協調을 진행하면서 공동보조의 對北壓力을 가하고,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對北壓力을 행사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셋째, EC 및 G 7 등 국제기구로 하여금 對北經濟·外交壓力을 행

사하도록 하고, 넷째, IAEA의 國際仲裁裁判所에 제소하여 북한에 대한 IAEA의 각종 핵관련 원조 중단 및 회원국의 권리 정지, 핵 공급국이 북한에 이미 공급한 核物資의 반환조치 강구, IAEA의 特別査察 실시를 추진하며, 다섯째, 이에 불응할 경우 미국과의 협의하에 유엔 安保理에 북한 재처리시설의 폐기를 상정·의결하게 하는 등 국제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한 政府次元에서는 주변 강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 經濟·交流協力 등 모든 남북관계의 개선을 재검토하고, 둘째, 미·일에 대해 對北韓 關係改善 및 修交協商 재고 요청 등 우방국과 共同 對應方案을 모색하며, 셋째,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全面 留保와 팀 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의 등 강경한 對策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 회: 감사한다. 그러면 두번째로 世宗研究所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춘근 박사가 토론해 주시겠다.

이 춘 근 박사(지정토론): 제가 토론에서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점들을 이미 남만권 박사께서 대부분 말씀해 주셨다. 남박사의 의견에 대체로 同意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위주로 의견을 말하기로 하겠다.

전박사께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급변하는 狀況을 잘 요약·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먼저 전박사께서는 남박사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와 같이 核問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핵무기 開發

否認」, 핵사찰에 있어서의 「非對稱查察」과 「疑心同時解消原則」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이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지 本質的인 意味에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북한의 核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북한의 本質的인 意圖, 즉 북한이 과연 核武器를 만들 것인가, 왜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意思가 없다면 왜 우리가 보여 달라는 施設들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

둘째, 相互查察 協商展望과 관련, 여러가지 技術的인 問題 때문에 협상 및 사찰의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이 相互查察을 수용하지 못하는 본질적이고 심각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한다. 相互查察을 수용한다는 것은 軍事的 開放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政治體制 자체를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북한체제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북한은 현재 「김일성·김정일정권의 생존」과 「國家의 生存」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북한은 「政權의 生存」을 위해서는 閉鎖體制를 유지해야 하고, 「國家의 生存」을 위해서는 체제를 開放하여야 하지만, 後者の 생존은 前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 및 여타 국가들의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방안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國家의 生存」을 위해 開放을 해야 할 것이라는 前提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開放을 통한 북한 주민과 사회의 생존, 즉 「國家의 생존」보다는 「김일성·김정일정권 생존」을 위한 핵무기개발에 더 重點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북한 지도부는 國民經濟가 더 발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閉鎖體制

를 유지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政權生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權力承繼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手段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한 相互査察 협상이 난관에 처하게 된 본질적 이유는 북한내부의 딜레마인 「政權의 生存」과 「國家의 生存」 문제에서 연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북한의 軍事的 開放拒否 태도와 관련, 전박사께서 북한이 開放을 꺼려하는 두번째 이유로 “... 북한이 經濟難으로 인하여 북한의 軍事力이 人的·技術的 側面에서 남한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도 있다. ... 북한의 막강한 軍事力에 대한 허상이 무너질 경우 북한은 南北對話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根據를 가지고 기술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넷째, 남북한 相互査察 協商의 促進 要素와 관련, 對外的 要因의 경우, 북한이 과연 미·일의 對北韓 壓力을 실제 압력으로 여기고 核査察 및 體制開放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생존」과 「국가의 생존」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피폐하게 되더라도 政權이 유지될 수 있는 한 대외적 압력을 견디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또한 對內的 要因의 경우, 북한은 교착상태에 빠진 相互査察 협상이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核問題를 해결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한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즉 核問題 해결이 우선인가, 南北關係 改善이 우선인가, 아니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핵문제를 回避해도 되는가 라는 문제

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相互査察이 직접 실시될 경우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전박사께서는 相互査察 대상으로 북한의 民間核施設과 남한의 軍事施設을 선정하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에 민간핵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異議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경우 民間核施設은 핵발전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영변 원자력연구센터의 경비를 軍兵力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人民軍 산하의 軍事武器研究所와 영변 원자력연구센터간의 깊은 聯關性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시설을 民間施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이와 아울러 논문 내용에 “... 전체적인 同數 原則에 입각해서 民間核施設과 軍事施設을 동시에 査察하되, 북한에 대해서는 民間核施設 중심, 한국에 대해서는 軍事施設 중심의 사찰이 실시되는 방향에서 妥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當爲를 말한 것인지 또는 앞으로 사건이 그런 方向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疑問을 가지게 된다.

전박사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법으로 남북한이 절충한 妥協案에 의한 査察과 效果的인 査察制度 확립 등 주로 長期的 側面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 남만권 박사께서 말한대로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찰제도 확립 등의 장기적 과제를 말하기에는 시간이 좀 급박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査察이라는 용어는 「inspection」 또는 「verification」으로 쓰인다. Verification의 목적은 疑心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심

을 解消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절충이 있다는 것은 상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못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곳이 10군데 있는데 북한이 9곳을 보라고 하고 1곳을 안 보여 준다면 우리는 9곳을 본다고 해도 하나도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 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한 곳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ll or nothing」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대충 다 보아야 올바른 査察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折衷的인 査察, 妥協的인 査察이라는 말이 용어·개념상으로 성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査察制度는 의심스러운 곳은 모두 볼 수 있는 방향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美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미국 人工衛星으로 찍을 수 없는 地下軍事施設이 12,0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IAEA가 그곳 모두를 査察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5~6명의 전문가가 북한에 가서 어떻게 그 많은 地下軍事施設을 다 살펴 보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김일성이 말한 대로 북한 핵무기는 同族을 절멸하는 용도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소한의 정치·군사적인 의미에서 남한에게 훨씬 어려운 상황을 부여할 可能性이 크다. 얼마 전 남북고위급회담 이동복 대표는 북한이 핵문제를 최후의 승부수(final showdown)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가 모두 解決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의 핵문제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면, 즉 북한이 원자탄 몇 발을 만



들게 되는 狀況에서 해결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國際秩序라든가 남북한 統一問題 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완만한 방식이 아닌, 좀 더 시급하고 급격한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 회: 세번째로 科技處 原子力協力課長으로 계시는 조청원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다.

조 청 원 박사(지정토론): 우선 오늘 전박사께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 核統制共同委員會의 교섭내용과 全般的인 事項을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들이 보고 있는 북한의 原子力 技術狀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한 후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요즘 우리가 놀란 것은 지난 4월 9일과 6월 10일 TV에서 방영된 바 있지만, 북한이 자신의 核施設을 비디오로 찍어서 남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로 인해 技術的인 側面에서는 북한의 核施設을 理解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북한의 核施設을 衛星寫眞, 비디오 그래픽 등의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상상해 본 것과 방송에서 방영된 實際內容을 비교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政治的·軍事的·戰略的인 면에서 과연 이것이 북한 핵시설의 전부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지난 4월 9일과 6월 10일 放映된 것 모두 현지 사찰팀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北韓에서 촬영한 것이다.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간 것조차도 북한에서 찍어준 것을 IAEA측에서 편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實務者 입장에서의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核技術 發展過程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50년 東歐圈에 원자력 기술습득을 위한 留學生을 파견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사화학연구소 산하의 방사화학실험실이지만) 1956년 放射化學研究所를 세웠으며, 그 연구소로부터 약 35년 내지 40년 동안 폐쇄적인 상황하에서 연구·개발을 진행시켜 왔다.

북한의 핵시설을 映像으로 보았을때 寧邊團地에 상당 수의 많은 큰 신축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西方施設과는 규모면에서나 시도하는 면에서 상당히 다른 방향이며,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舊蘇聯쪽에 편향되어 있는 기술로 보였다. 건물의 외형만 보아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4일에 공개된 시설은 14개에 불과하였다. 1990년에 이런 14개 시설 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放射化學實驗室은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물론 量은 少量(mg order)이지만 이것은 再處理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재처리 능력이 있다는 내용과 그 곳에서 처리한 플루토늄의 양 및 재처리 능력의 技術的 發展程度는 남한에도 재처리에 관한 전문가가 충분히 있으므로 능히 평가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이 제2원자로(西方에서는 제2원자로라 부르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자력건설한 것부터 계산하므로 제1원자로라고 함)의 容量을 시종일관 5MW

Electric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우리들의 의심을 加重시키는 부분이다. 북한에서 공개한 原子爐는 보면 연구용 원자로이지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보통 원자력 발전소의 發展容量이 100만KW인데 비해, 북한은 5천KW 짜리 용량의 원자로를 原子力發電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프로그램을 상당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5천KW의 용량에서 시작하여 5만KW, 20만KW까지의 建設計劃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63만 5천KW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의 核技術能力을 평가하면 基礎技術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技術의 內容面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라든지 서방에서 그 기술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필요한 것은 필요한 방향에서 해결해 나가는 技術能力面에서 어느 정도 기초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공개한 14개의 핵관련 시설을 고려해 볼 때,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점은 북한이 再處理能力을 보유하고 原子力技術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는 현재 북한이 對外的으로 밝히고 있는 핵시설 설명의 技術的인 虛構性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겠다. 북한은 플루토늄의 제조이유에 대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서 原子力發電所의 燃料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原子力發展形態面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高速增殖爐’인데,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원자로와는 형태가 다른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 原子力 프로그램을 段階的으로 추진하는 이유로 外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物資供給이 불완전하므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요즘 한국이나 서방,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축적된 핵관련 기술을 提供해 준다면 다른 형태의 原子力 發展計劃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하곤 하는데 이는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럴 듯하다고 본다.

技術的인 面으로 말한다면 混合 核燃料나 高速 增殖爐 부분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時期와 用途에서 적합하지 않다. 우선 한국의 경우 原子力發展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混合 核燃料의 문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高速 增殖爐 문제는 약 20년 앞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프로그램을 기술 발전면에서 판단해 볼 때 이러한 북한의 향후 推進日程은 최소한 30년은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30년 이후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북한은 최근 경수로 건설 내지는 西方의 援助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북한 原子力施設의 安全性에 관한 문제이다.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放射能 流出事故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물론 북한에 있는 발전소의 크기가 체르노빌 발전소에 비하면 상당히 작지만 우려해야 될 점은 북한 原子力施設의 原理가 체르

노빌 발전소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失手가 되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전문가 팀들이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 原子爐의 基本 設計資料로 쓰였던 英國의 켈다홀 원자로는 1950년대에 軍事用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로 쓰였던 것인데 이 원자로에 터어빈 발전기가 있었으나, 주로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되었다. 그와 유사한 원자로가 1950년대에 영국 웬디스 케일지방에서 事故난 적이 있다. 과거에 북한보다 더 기술이 발전했던 영국이나 구소련에서 사고경험이 있는 원자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요즘 많이 지적되고 있는 듯 하며 우리도 技術的인 面에서 多角度의 分析을 하고 있다.

西方에서는 放射能 安全性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이의 예방을 위해 行政體系를 잘 갖추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放射能 安全問題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체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원자력공업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력공업부 산하에 安全問題를 책임지는 機構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IAEA는 북한에서 핵사찰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IAEA의 북한 핵사찰 결과와 이것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먼저 再處理問題와 관련하여 IAEA는 북한에서 추출한 少量의 플루토늄을 가져다가 標本抽出을 하였다고 한다. 표본추출 분석은 통상적으로 3회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6월 말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형 플랜트(plant), 즉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가 어디에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사찰단이 북한에 갔을 때 未申告된 施設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寧邊 서북쪽 연구단지에는 同位元素 처리시설 내부의 핫셀(hot cell)을 申告對象에서 누락시켰다. 북한은 그곳에서 소량(mg order)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IAEA는 이번 사찰에서 未申告된 施設을 하나 더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IAEA측에서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未申告된 시설들이 계속 발견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IAEA측에서 재차 臨時査察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사점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전박사의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IAEA의 特別査察은 우리가 경험한 유엔 對이라크 強制査察과는 개념이 다르다. 우선 IAEA의 특별사찰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시행될 수 있다. 當事國이 특별한 보고를 했을 경우와 IAEA가 사찰한 結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이다. 後者의 경우는 當事國과 합의해야 하므로 그것이 특별사찰이라 하더라도 強制性을 띠지 않는 사찰이다.

유엔의 對이라크 強制査察은 걸프戰 패전 이후 유엔 安保理 제 687호 결정에 의한 사찰이므로 위의 경우와는 性格이 전혀 다르다. 安保理 결정에 의한 강제사찰은 當事國의 의사와 관계없이 査察團이 원하는 대로 사찰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이라크가 6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으며,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技術, 原料 및 原子爆彈을 보유하려는 意圖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판단하건대, 이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IAEA가 실시하는 國際査察은 분명한 限界가 있으며, IAEA가 담당할 수 없는 領域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북간의 相互査察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 회: 세 분 선생님의 토론과 질문이 있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북한의 핵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技術的 次元, 南北韓 내지는 國際政治的인 次元 또는 軍事的인 次元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측면을 상대적으로 強調하느냐에 따라서 미묘한 입장 차이의 가능성이 노정될 수 밖에 없는데 토론과정에서도 그러했던 것 같다.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북한 핵시설에 대한 客觀的인 評價問題,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意圖에 대한 評價問題, 그리고 그것에 대한 對應方案의 모색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상당한 토론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문제들이다. 일단 전박사의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가지겠다.

전 성 훈 박사: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남박사의 첫번째 질문 “북한이 核武器를 개발하려는 意圖가 있는가”의 문제는 이박사의 질문과 같은 것으로, 본인으로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도가 있다 없다 라고 斷定的으로 말할 수

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박사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再處理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스라엘의 경우 地下에 再處理施設을 가지고 있으나 核實驗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100~15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核保有國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非核化共同宣言」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核保有 可能性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相互査察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북한의 核관련 시설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가 우리의 核活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핵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平和的 核利用方案을 통한 間接的 査察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박사의 두번째 질문인 北韓 核開發의 時急性問題는 이박사의 질문과 같은 것인데, 게이츠(Robert Gates) 美 CIA 局長이나 여러 사람들은 IAEA의 핵사찰이 실시되기 전,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保有할 수 있는 기간을 수 개월에서 1~2년 정도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지난 6월초 방한한 레먼(Ronald Lehman) 美 軍縮處長은 「韓半島 軍縮 4個國 學術會議」라는 세미나에서 “... 相互査察 協商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며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보다 效果的인 査察制度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示唆性 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을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IAEA 臨時査察로 드러난 북한의 核施設이 예상보다 별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對北韓 核政策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



지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미 남북한 相互査察 실시를 주장해 왔으며 또한 한반도 뿐만 아니라 中東, 南아시아지역도 核擴散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사찰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模範的인 査察制度를 마련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세계의 核擴散을 防止해야 되겠다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큰 구도하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어쨌든 IAEA 사찰이 진행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核開發 문제에 대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방향으로 立場을 정리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韓半島 非核化의 과제와 관련, 남박사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는 앞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로 하겠다.

다음으로 이춘근 박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로 하겠다. 북한의 核査察 수용 거부와 관련, 본질적인 이유가 軍事的 開放 거부라기보다는 體制開放 거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군사적 개방이란 결국 體制開放과 직결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核査察이란 軍備統制條約을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본인이 이미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사찰이란 군비통제 檢證方案 중 受檢國의 주권침해 소지가 가장 많은 강력한 검증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소간의 군비통제 검증 역사를 볼 때, 査察(보다 정확한 표현은 現場檢査) 수용여부에 대해 수십년간 논쟁을 벌여온 것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1950년대 말 「全面核實驗禁止條約」을 위한 미·소간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소련 영토내에서 現場檢査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소련은 主權의 침해 및 現場검사를 빙자한 합법적인 간첩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現場검사는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査察 回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전면핵 실험금지조약」 협상이 실패하고 地下核實驗만 허용하는 「部分核實驗禁止條約」이 1963년 체결되었다. 이외에도 SALT I 이나 SALT II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은 現場검사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소련은 이에 반대하여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現場검사가 채택된 조약이 하나도 없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은 여러가지 軍備統制條約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의 입장이 변화하여 결국은 체제 변화로 인해 現場검사에 대한 소련의 입장이 수정되어 1986년 체결된 「스톡홀름 協約」은 現場검사가 檢證方法으로 채택된 최초의 중요한 조약이 되었다. 그 후로는 INF 조약이나 최근에 체결된 CFE, START 등에서는 現場검사가 체계있게 제도화되어 있다.

결국 북한이 體制開放에 대해 거부적이기 때문에 査察 수용문제에 거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재 협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민간핵시설이 있느냐 라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軍事施設에 대한 相對概念으로 核에 관한 일반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설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우리가 核査察 協商을 하는 데 있어 타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지적과 관련,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 먼저 核査察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장과 대안을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 결국은 절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一方이 강력한 힘에 의한 압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타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100% 檢證은 불가능하다”라는 검증의 一般的인 原則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만일 함경도 골짜기에 동굴을 만들어 여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탐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査察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따라서 본인이 논문 후반부에서 언급한 平和的 核利用을 위한 남북간 협력은 단순한 協力次元의 문제가 아니라 간접적·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적인 査察方案이라고 생각한다. 査察과 協力を 병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核開發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 회: 이제 一般討論을 시작하기로 하겠다.

정 대 화(민주당 정책위원회): 사실확인 차원에서 발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째로, 지난 5월 27, 28일 核統制共同委 제5차 회의를 전후해 우리 정부측이 強制査察의 방식으로 不時査察과 特別査察을 제안했는데 이 방식은 정황논리나 상황논리를 떠나 쌍방 당국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말씀을 듣고 싶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 발표자께서 논문 중간에 북한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것은 同 宣言 제3항의 위배가 아니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전에 최우진 북한 핵통제공동위 위원장은 북한이 平和的 目的의 핵개발은 계속할 것이고, 이는 同 宣言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북한은

어느 나라로부터도 核技術을 원조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核技術의 자기 완결적인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의 핵개발을 평화적 목적, 즉 非軍事的 意圖의 핵개발이라고 인정한다면 이것도 同 宣言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셋째, 북한의 軍事施設 査察與否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자기 군사시설을 개방하는 동시에 남한에 존재하는 駐韓美軍의 군사시설 외에 韓國軍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다면 이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넷째, IAEA의 사찰이 남북간 相互査察보다 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본인은 정부당국자가 IAEA 査察方式을 개선한다면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라크의 교훈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따라서 IAEA 혹은 國際査察이 상호사찰보다 반드시 못하다는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核雨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의해 우리가 핵우산을 받는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核攻擊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상황을 전제로 核雨傘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사 회: 질문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發表者가 짧게 답변을 하고 다른 질문을 받기로 하겠다.

전 성 훈 박사: 첫째 질문과 관련, 不時査察이나 特別査察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기는 特別査察이라 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査察對象과 時點이 단기간내 통보되기 때문에 불시사찰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強制査察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강제사찰은 이라크에서 행해진 것과 같이 受檢國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특별사찰은 남북한간 合意에 의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사찰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사찰이 同 宣言 제4항에 위배되는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同 宣言 제4항에는 “비핵화를 檢證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가 규정한 節次와 方法에 의해 査察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측이 선정을 하되 쌍방이 합의를 해야 한다. 북한측은 이 조항에 의거 남한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特別査察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도 특별사찰이 쌍방의 합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핵통제공동위가 규정한 節次와 方法上의 문제로 본다면, 특별사찰을 수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 비핵화 공동선언 제3항에는 核再處理施設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 同 宣言이 합의되기 이전에는 핵재처리시설의 보유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없었지만, 同 宣言이 합의된 이상 이 시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로 한국의 軍事基地를 사찰대상으로 제외할 경우 수용할 수 없겠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 경우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査察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측의 입장이 더 편해진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駐韓美軍의 기지를 査察對象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核을 보유했었다는 과거의 사실까지도 들추어

내어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기지가 일반 군사기지와는 다른 核基地라는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기지 開放問題와 연계될 수 있는 一般 軍事基地에 대한 사찰을 주장할지는 의문시 된다.

넷째 질문과 관련, 한국에도 많은 核專門家들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미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IAEA의 사찰방식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달리 良質의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核物質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에 국제적인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다. IAEA는 鑛山이나 精鍊施設에 대한 査察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IAEA 사찰방안의 한계는 IAEA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相互査察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核雨傘 문제와 관련, 한반도는 이미 非核地帶化가 선포된 중남미·호주 등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중국과 國境을 접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東北亞에서의 核減縮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의 경우 대규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방국의 核雨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 회: 다음에는 조순승 의원께서 질문하기로 하겠다.

조 순 승 의원: 현재 IAEA의 核査察 협약에 재처리시설을 가

질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가? 일본 등 일부국가는 核再處理施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핵무기 개발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만일 재처리시설을 平和的 에너지 使用目的으로만 보유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의 최우진 대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비핵화 공동선언」 제3항에 의거, 廢棄할 것만을 요구해야 하는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본은 앞으로 185톤의 플루토늄을 저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영원히 再處理施設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기할 경우, 이는 향후 우리의 에너지문제와 관련된다 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영원히 核原料를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自給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目前에 급급하지 않고, 統一 이후의 상황을 고려, 우리의 國益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1970~80년대 당시 국제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clean bomb과 dirty bomb의 문제이다. 핵개발시 dirty bomb은 重量의 포탄을 만들기는 용이하며 小型·輕量의 폭탄을 제조하기는 어렵다는데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경우 dirty bomb 혹은 clean bomb이 될 것인지, 그 중량은 運送手段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68년 일본의 사도에 에이사쿠는 일본이 核彈頭를 성냥갑 크기 정도로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彈頭의 運搬手段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일본은 東京大에 위탁, 미사일 개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제 일본은 당장이라도 核國家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輕

량의 폭탄을 제조, 한국에 사용할 만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시된다.

그리고 북한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정도의 폭탄을 개발한다면 이는 過剩殺傷能力(overkilling capacity)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1957년에 키신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럴 경우에도 핵의 效用性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일성도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끝으로 미국의 결의로 核査察을 강요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surgical operation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만약 surgical operation을 실행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 회: 조의원의 질문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 박사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討論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전 성 훈 박사: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NPT에 가입하는 국가는 核武器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平和的 目的의 核利用을 위한 기술적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IAEA 협약이나 NPT 가입국의 再處理施設 보유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규상으로는 북한도 재처리시설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平和的 利用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미 조청원 박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핵



재처리시설을 고속증식로 등에 이용하려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의 技術水準이 이에 맞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평화적으로 사용한다는 根據가 미약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이 시설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IAEA 검사하에 놓이게 한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재처리시설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는 「非核化 共同宣言」에 違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는 문제는 統一 후의 에너지문제를 위해서도 재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일본도 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조의원 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일본은 전후에 核物質 기술 습득을 위해 일찍부터 IAEA 査察을 수용한 나라라는 점이다. 이후 일본은 査察 수용에 있어서 매우 성실한 준수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核武器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國際的인 信賴를 수십년간 쌓아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국제적인 의혹을 산 적이 있으며(남한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북한이 경우는 현재), 아직도 國際社會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의심받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非核化 共同宣言」에 합의하고도,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이 선언을 번복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의 國際的 信賴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잘 준수하여 國際的 信賴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시간이 지나 統一이 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충분히 쌓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再處理施設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사 회: 조박사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 청 원 박사: IAEA 협약상 핵재처리시설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 있어 국제적으로 재처리시설은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는 경우 통용되고 있다. 즉 國際的 信賴와 플루토늄의 용도에 대한 當爲性에 대한 설명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국제적 합의하에 통용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이의 좋은 예가 된다. 일본은 에너지 安保를 이유로 미국과 15년에 걸친 협상을 벌인 결과, 1987년 「新美·日 原子力協定」을 통해 이를 얻어냈다.

국제적 신뢰와 관련, 일본은 핵원료 공급당사국의 査察을 받아왔다. 또한 현재까지 IAEA로부터 13회에 걸친 사찰을 받은 바 있으며, 1979년부터 IAEA와 査察問題관련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IAEA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참고로 우리는 査察問題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信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1991년부터 IAEA와 査察關聯 會議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뢰가 축적되면, 향후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문제, 핵 기술 축적에 대한 當爲性 등을 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dirty bomb과 clean bomb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잘 알다시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은 차이가 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은 농축우라늄을 原料로 한 것이었고,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은 플루토늄을 原料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두 개의 폭탄 모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原料의 13~15%가 폭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어떤 중량이 될지는 모르지만 核爆彈을 제조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음은 純度와 관련된 문제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공히 핵분열 물질로 폭발성을 가진 同位元素가 있고, 폭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위원소가 합쳐져 있다. 플루토늄의 경우 약 94~95% 이상, 농축 우라늄의 경우 98% 이상의 純度を 가질 때 물질측면에서 clean bomb이 된다. 量으로 볼 때, 플루토늄은 7~8kg(적게는 4~5kg), 우라늄의 경우 20~25kg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爆發裝置를 고려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에 고풍실험을 상당히 많이 한 듯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clean bomb이 되고, 폭발은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dirty bomb이라 할 수 있다. 물론 dirty bomb의 경우 폭발의 強度는 약하지만 플루토늄의 경우 분산되었을 때, 맹독성 화학물질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在來武器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運搬手段에 대한 언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폭기로 투하한 선례도 있어 미사일이나 전폭기간의 구별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요즘 미국이나 서방의 原爆技術에 대해 말씀드리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과 같은 경우

150mm 포탄 크기로 줄일 수 있다. 技術的으로 볼 때, clean bomb과 dirty bomb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사 회: 시간이 거의 다 된 듯 하지만 軍事的인 응징문제에 대해서 남박사께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

남 만 권 박사: 만약 북한이 여러가지 國際的 壓力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安保秩序와 平和維持 차원에서 유엔 安保理가 軍事目的을 가진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결의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행방법과 관련, 북한이 여전히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유엔 安保理가 이라크 핵시설에 적용했던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軍事的 制裁措置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겠지만 擴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국과 국제사회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 회: 약 두 시간에 걸쳐 북한의 核問題와 韓半島의 非核化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처음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두 시간의 토론을 통해 어떠한 정답을 얻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核施設 및 意圖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合理的 對應方案, 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공개·비공개 모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두 시간 동안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후 이러한 회의를 가질 때 고려해 보아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한다. 첫

재, 북한 核施設에 대한 평가나 意圖에 대한 평가는 결론이나 정답을 전제하지 않고, 모른다는 전제 위에서 좀 더 치밀한 檢討過程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시간관계상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韓半島 非核化나 북한의 核問題가 가지는 기술적·정치적·군사적인 多元的 性格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찰규정의 마련과 관련, 發表者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에서도 複合的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추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核問題가 査察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의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기회에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技術的 次元을 넘어선 정치적·군사적 나아가 哲學的인 代案에 대한 검토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주제를 발표해 주신 전성훈 박사와 세 분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1 회의를 마치고자 한다.

## 第2會議：南北協商的成果와 南北關係 發展方向

1. 主題發表 …………… 鄭圭燮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2. 討 論

● 司 會：金達中 (延世大 教授)

● 討 論：孫鶴圭 (西江大 教授)

呂永茂 (東亞日報 安保統一問題研究所長)

韓昇洲 (高麗大 教授)

빈 면

# 南北協商的 成果와 南北關係 發展方向

鄭 圭 燮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I. 序 論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2.19)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南北韓 當局은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반목과 불신에서 벗어나 和解·共存關係를 制度化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이후 南北韓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南北協商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제7차 고위급회담(1992.5.6~5.7)은 「경쟁적 공존」 단계로 들어선 남북관계가 회담 결과에 따라 實踐段階로 이행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의 의미를 지닌 회담이었다. 제7차 고위급회담 결과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규정에 따라 5월 19일까지 공동위를 구성하고 和解分野 이행기구로서 「남북화해공동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합



의하였다. 또한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방문, 차기 회의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는 총체적으로 볼 때 합의서 발효 이후 踏步狀態에 있었던 남북협상 상황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이며, 합의서 이행에 대한 양측의 實踐意志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이행·실천을 기대할 수 있는 결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제8차 고위급회담(1992.9.15~18) 이전에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3부문에 대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면, 남북한은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實踐事業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즉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금년 9월 이후 南北關係는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시대 개막 → 평화정착 및 공존공영」의 構圖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월 22일 北韓軍의 무장침투 사건, 5월 27일 핵통제공동위 제5차 회의에서의 南北 核査察 규정 채택 무산 및 5월 29일 제46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의 북측 불참 등과 같은 상황발생은 남북관계 진전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남북관계의 「기본틀」로서의 「기본합의서」와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현시점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南北協商의 現況 및 成果를 검토함으로써 그 의미를 評價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의 對南協商 태도를 분석한 토대위에서 南北關係 發展方向을 전망하고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構圖와 우리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南北協商的 爭點 및 成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發效 이후 남북한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分科委員會와 核統制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제7차 고위급회담 개최 이전에 각각 3차례에 걸친 회의와 정치분과위 1차 위원접촉, 교류·협력분과위 4차 위원접촉 등 총 17회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主要 爭點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노정됨으로써 남북합의사항의 조속한 履行·實踐이 지연되었다. 본절에서는 제7차 고위급회담 개최 이전까지 남북협상과정에서 노정된 기본 쟁점과 부문별 쟁점을 분석하고, 제7차 고위급회담과 이후의 협상에서 타결된 成果를 검토·평가하려 한다.

### 1. 南北協商的 爭點

#### 가. 基本 爭點

남북협상과정에서 나타난 基本 爭點은 통일3원칙의 해석, 부문간 우선순위, 「부속합의서」의 성격과 이행방법, 공동위 구성의 우선순위, 공동위의 機能과 數, 접촉장구 등의 문제로 요약된다.

첫째, 「기본합의서」 서문에 명시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라는 구절에 따라 북측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統一3原則이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의 基本原則으로 견지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sup>1)</sup> 이에 대한 解釋問題가 남북간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

---

1) 「7.4 공동성명」의 統一3原則에 대해 김일성은 1972년 9월 17일 「每日新聞」

다. 통일3원칙에 대해 우리측은 自主原則을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으로, 平和原則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로, 民族大團結을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보장 기초위에서의 통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자주원칙을 외세배격 입장으로, 평화원칙을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로, 민족대단결을 각계 각층 인민들의 자유접촉·왕래 및 이를 위한 사상적·제도적 장벽 제거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의 優先順位에 대해 우리측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部門間 均衡推進을 주장한 반면, 북측은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을 주장하였다.<sup>2)</sup>

셋째, 부속합의서의 성격과 履行方法에 있어 우리측은 「기본합의서」상의 各 條項 또는 事案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한 「事案別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건별합의·즉시실천」하자는 입장에서 5개의 和解分野 부속합의서(비방·중상중지, 파괴·전복금지, 평화상태전환, 국제무대협력, 상호체제인정 및 불간섭)와 4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自主原則은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 간섭배제, 平和統一原則은 남한의 군사시설 보강·장비현대화·군사연습 중지, 民族大團結은 남한의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후 통일3원칙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이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저작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 287~289;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256~257.

2) 북한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의 交流優先論이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측의 交流優先 主張에 대하여 “북에 〈교류〉통로를 통하여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고, 우리를 〈흡수통합〉해보려는데 음흉한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완강한 거부 입장을 보였다. 「로동신문」, 1992년 2월 10일자; 1992년 2월 20일자.

의 交流·協力分野 부속합의서(인도, 통신·통행, 경제, 사회·문화), 1개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등 총 10개의 附屬合意書案을 제시하였다.<sup>3)</sup> 이에 반해 북측은 각 부문의 포괄적인 基本方向과 履行原則을 규정한 「부문별 단일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일괄합의·동시실천」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sup>4)</sup>

넷째, 共同委 構成의 優先順位에 대해 우리측은 각 부문별 「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를 우선 채택하여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한 制度的 裝置 完備를 주장한 반면, 북측은 공동위 구성에 앞서 각 부문별 단일부속합의서를 우선 채택할 것을 주장, 부속합의서 채택과 공동위 구성을 연계시키는 입장을 보였다.

다섯째, 共同委의 機能과 數에 대해 양측은 이견을 보여 왔다. 공동위 기능에 관해 우리측은 각 분과위에서 部門別 實踐事業을 협의하여 사안별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각 공동위에서는 사안별 부속합의서에 따른 구체적 實踐業務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

---

3) 4월 28일 개최된 교류·협력분과위 제4차 위원접촉에서 우리측은 단일부속합의서 채택에 동의하여 북측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4월 30일 군사분과위 제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부속합의서 案을 제시하였다.

4) 연형묵 총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시 기본발언을 통해 「일괄합의·동시실천」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쌍방이 다같이 선차성을 부여하는 문제이거나 합의와 실천에서 다른 문제들과 어느정도 독립성을 띠는 문제들에 한해서는 건별로 합의하고 즉시 실천하자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언급하여 履行方法에서 융통성을 보였다. 「로동신문」, 1992년 2월 21일자. 이러한 북측의 입장은 제7차 고위급회담시 연총리의 기본발언을 통해 “쌍방 합의의 특수문제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건별합의, 건별실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차 표명되었다. 「로동신문」, 1992년 5월 7일자.

다. 이에 반해 북측은 각 분과위에서 포괄적 내용의 「단일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각 공동위에서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을 협의·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共同委 數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법률, 비방·증상증지, 군사, 인도, 경제, 사회·문화, 통신·통행공동위 등 총 7개 공동위 구성을 제의하였으나,<sup>5)</sup> 북측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공동위 등 총 4개의 공동위 구성을 제의하였다.

여섯째, 接觸窓口 問題에 대해 우리측은 南北 當事者 原則에 입각, 당국간 공식 접촉을 통한 합의사항의 이행·준수 입장을 견지한 반면, 북측은 각계 각층 인민들의 참여를 통한 接觸窓口 多元化를 주장하고 있다.<sup>6)</sup>

#### 나. 部門別 爭點

이와 같은 기본 쟁점과 함께 각 분과위 및 핵통제공동위에서의 주요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政治分科委員會

남북 양측은 政治分科委 협상에서는 화해부문의 원칙, 기구구성 의 우선순위, 실천과제 등에서 이견을 노정하였다.

---

5) 4월 28일 개최된 교류·협력 분과위 제4차 위원접촉에서 우리측은 통신·통행공동위 구성제의를 철회하였다.

6) 북한은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 에서 交流·協力は “당국자들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거족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였고, 남북협상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91년 12월 25일자.

첫째, 和解部門 原則에 있어 우리측은 상대방 체제·법질서 존중, 남북 당사자 해결, 남북호혜를 제시한 반면, 북측은 자주, 통일지향, 민족대단결 도모를 주장하였다.<sup>7)</sup>

둘째, 화해분야 機構構成 優先順位에 있어 우리측은 「기본합의서」규정(7조)에 의거하여 남북연락사무소 우선 구성과 화해분야 法的 爭點事項의 調整·解決을 위한 법률공동위와 비방·중상중지 공동위의 구성을 제안한 반면, 북측은 화해부분 「단일부속합의서」(8조 23항) 채택 및 남북고위급회담 外的 履行機構로서 정치공동위를 우선 구성하고, 그 후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연락사무소 구성에 대해 양측은 4월 29일 개최된 정치분과위 제1차 위원접촉시 명칭과 기능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설치장소와 기구구성 등에는 합의하였다.

셋째, 정치분과위에서 실천할 課題에 대해 우리측은 20개 協議 課題를 제시한 반면, 북측은 「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철회했던 주장들을 화해부분 「단일부속합의서(안)」에 포함시켜 再舉論하고,<sup>8)</sup> 23개 實踐課題를 제시하였다.

## (2) 軍事分科委員會

軍事分科委 협상에서 우리측은 북측의 核査察 早期受容을 지속

---

7) 북측은 우리측의 상대방 체제·법질서 존중 원칙을 「두개 조선」 고착화의 시도로, 당사자 해결원칙을 각계·각급 인민들의 排除宣言으로 비난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3월 10일자.

8) 북측이 「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철회했던 주장을 재거론한 내용은 상대방에 자기의 사상·제도 不強要, 법률적·제도적 장애 제거, 상대방 찬양,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보장, 다른 나라와 맺은 군사조약 및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협정의 개정·폐기 등이다.

적으로 촉구한 반면, 북측은 우리측이 「기본합의서」 이행·실천과 핵사찰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不可侵部門 협의·실천의 원칙, 直通電話 설치문제, 군사공동위의 임무 및 기능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첫째, 불가침부문 協議·實踐의 原則에서 우리측은 남북 당사자 해결, 부문별 균형 추진, 실천성 보장 원칙을 제시하였고, 북측은 自主, 對決觀念 脫皮,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및 평화보장을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 등을 주장하였다.<sup>9)</sup>

둘째, 直通電話 설치문제에 관해 우리측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시범적 실천조치로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문제(「기본합의서」 규정 13조)의 우선 협의·해결을 주장한 반면, 북측은 불가침 부문의 條項別 順次討議 원칙에 따라 해당조항 토의시 同問題의 협의·해결과 군사부문 「단일부속합의서(안)」(7조 15항)의 우선 채택을 주장하였다.

셋째, 軍事共同委의 任務·機能에 대해 우리측은 군사공동위는 「기본합의서」 규정(12조)에 따라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축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협의·추진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북측은 부속합의서 실천사업의 협의·추진 및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관련 실천적 문제의 협의·추진 등 「기본합의서」 규정상 군사공동위의 기본 임무를 벗어나는 내용을 주

---

9) 북측은 우리측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북한의 對美接近 制動 및 대중의 통일논의 참여배제로, 균형추진원칙을 중핵적 문제의 회피로, 실천성 보장원칙을 先협의 後채택을 위한 것으로 비난하였다. 「중앙방송」, 1992년 3월 31일자; 「로동신문」, 1992년 5월 1일자.

장하는 한편, 군사공동위 위원장을 우리측 案보다 上位職級인 총참모장급 또는 부부장급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 (3) 交流·協力分科委員會

交流·協力分科委에서는 기본 쟁점에서 언급한 부속합의서의 종류, 공동위 구성 문제 뿐만 아니라, 실천원칙, 이산가족문제, 교통로 개설, 접촉창구, 경제교류·협력 절차 및 지원기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첫째, 교류·협력부문 實踐原則에 관해 우리측은 호혜성, 통일지향성, 先제도적 장치마련, 건별합의·즉시실천 등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민족자주, 민족공동이익 및 민족의 통일적 발전 도모, 상호양보·타협 등을 주장하였다.

둘째, 離散家族問題에 대해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의 時急性을 고려하여 同 분야의 부속합의서 채택 이전이라도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우선 실시를 제안한 반면, 북측은 이산가족문제는 南北赤十字會談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산가족문제의 解決條件으로 「법적·제도적·물질적 조건 보장」을 제시하였다.

셋째, 交通路 개설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하여 도로·철도·해로의 同時開設을 제안한 반면, 북측은 海路 優先開設을 제안하였다.

넷째, 接觸窓口에 관해 우리측은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후 민간접촉 활성화 방침을 제시하였고, 북측은 우리측 입장을 당국 독점하의 교류방침이라고 비난하면서 接觸窓口 多元化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다섯째, 경제교류·협력 節次 및 支援機構問題에 관해 우리측은 교류·협력대상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것과 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교류·협력대상자의 자유접촉 허용을 주장하고, 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4) 核統制共同委員會

核統制共同委에서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 檢證을 위한 查察規定의 조속한 채택을 최우선 과제로 주장한 반면, 북측은 비핵화문제 해결의 자주적 입장 견지, 비핵화 완전 실현, 비핵화 성과 공고화 및 核威脅의 窮極的 清算 등을 주장하여 양측은 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입장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sup>10)</sup> 사찰대상 및 사찰원칙, 상호사찰규정, 사찰방법 등에서도 이견을 나타내었다.

첫째, 查察對象 및 查察原則에 관해 우리측은 상호사찰의 「동수원칙」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핵무기·핵기지 사찰을 우선시하고, 우리측의 동수원칙 주장이 미군핵기지에 대한 사찰회피 術策이라고 비난하면서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입각하여 美軍事基地에 대한 「전면사찰」을 주장하였다.

둘째, 相互查察規定에 대해 우리측은 相互查察의 세부규정으로 「남북 상호 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12조 35항)을 제시하

---

10) 북측은 ①외국 핵무기의 자국영역 통과 금지, ②핵무기 지원협정 및 조약체결 不許容, ③핵무기 사용작전 및 훈련 중지, ④외부 핵위협 공동 대처 등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과정에서 철회했던 주장들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합의서(안)」에서 再舉論하여 非核地帶化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였으나, 북측은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합의서(안)」(8조 23항)를 제시하고 同 합의서의 부록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24조 39항)을 제안하였다.

셋째, 査察方法에 있어 우리측은 「정기사찰」과 「특별사찰」로 大別하여 사찰종류·대상·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명시적 사찰규정을 두지 않고 쌍방 합의에 따른 사찰을 주장하였다.

## 2. 妥結現況 및 評價

이상과 같은 제7차 고위급회담 개최 이전까지 남북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共同委 構成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근접해 나갔으며, 부속합의서 채택문제에 관해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하여 「부문별 단일부속합의서」 채택 방향으로 쌍방의 입장이 상호 절충되어 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合意事項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7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履行機構 構成,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방문, 차기 회의일정 등에 합의하여 「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난항을 거듭해 온 남북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sup>11)</sup>

제7차 고위급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간 기본 쟁점이었던

11) 북한은 제7차 고위급회담시 合意內容에 대해 “이것은 북남합의서를 리행 해나가는데서 거둔 중요한 성과로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을 실현하고 다각적인 협상과 협력, 교류를 통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것으로 된다”라고 논평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5월 8일자.

공동위 구성의 우선순위, 공동위의 機能과 數 문제가 타결되어 「기본합의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행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機構構成 문제에 있어 양측은 남북연락사무소, 군사공동위, 교류·협력 공동위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화해공동위 구성·운영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履行하고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합의서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외형적으로나마 마련하게 되었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의 機構構成 문제 합의결과를 평가하면, 첫째, 부속합의서 채택 이전에 공동위 구성이 실현된 것은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지만, 공동위의 機能 및 數는 북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정치분과위의 쟁점이었던 연락사무소의 설치지역은 북측의 요구대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연락사무소의 機能 가운데 북측이 요구했던 정당·단체·개별인사에 대한 연락담당을 삭제시킨 것은 우리측 요구에 따라 합의된 것이다.

셋째, 공동위 합의사항의 效力發生에 대해 「중요한 문건」은 총리의 서명(교류·협력공동위)과 공동위원장의 서명(군사공동위) 및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위를 고위급회담 테두리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은 북측의 공동위의 고위급회담 外的 機構化 시도를 어느 정도 방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동위의 의제, 회의일정, 실무사항에 관한 附屬合意書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위를 발족시킨 것은 實踐內容이 부재한 상황에서 機構만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노정시킨 것이다.<sup>12)</sup> 또한 공동위 機能이 우리측의 「구체적 실무업무 담당」(각 분과위 합의사항의 실천기구)에서 북측의 「협의 및 실천기구」로 타결된 것은 향후 남북합의사항 이행에 또 다른 난관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첫째, 공동위가 부속합의서 이행 뿐만 아니라, 실천대책 협의 및 실천을 위한 「세부합의서」 작성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協議機構로서 분과위의 位相이 格下되거나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공동위 위원장이 차관급 이상(군사공동위) 및 장관 또는 차관급(교류·협력공동위)으로 각각 합의되어 분과위 위원장이 공동위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공동위가 분과위의 上位機構化되었다는 점은 분과위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공동위에서 향후 수많은 세부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남북합의사항의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北韓은 제7차 고위급회담 결과 “아쉬운것은 각 부분의 공동위원회가 지침으로 삼고 사업해야 할 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키지 못한것”이라고 論評하고, 그 책임은 남측이 “북남합의서의 모든 조항들을 다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 특히 핵심적인 조항들을 토의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북남합의서의 원만한 리행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이다”라고 비난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5월 8일자.

13) 南北軍事共同委 合意書에 규정된 군사공동위의 機能은 ①불가침의 이행·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 ②필요한 합의서 작성·실천, ③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④합의사항 실천 확인·감독 등이다. 또한 南北交流協力共同委 合意書에 규정된 교류·협력공동위의 機能은 ①부속합의서 이행, ②필요한 경우 세부합의서 작성, ③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 협의·실천, ④실무 협의회 활동의 종합·조정 등이다.

셋째, 북측은 교류·협력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에 규정된 교류·협력 당사자와 해당전문가 참가 허용조항(3조 5항)을 활용하여 당국간 회담의 틀내에서 政治協商會議 소집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측 共同委 委員이 정부기관 대표로 구성된 데 반해, 북측 공동위 위원중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로동청년사 등 黨 외곽단체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북측이 향후 공동위를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두번째로 제7차 고위급회담의 可視的 成果는 8.15를 계기로 각기 노부모 1백명과 예술인 70명, 70명의 기자·지원인원으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방문에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교류·협력분과위 회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오던 북측이 前提條件 없이 방문단 교환을 수용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평가되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는 데 意義가 있다. 그러나 방문단 교환이 「특례사업」으로서 定例化가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북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一回性 事業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방문단 교환사업이 赤十字團體에 위임된 것은 接觸窓口 多元化的의 先例가 되어 북측의 다양한 통로의 접촉제외에 대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이번 합의된 교환단 방문 시기는 북측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범민족대회(8.12~17), 제2차 통일대축전 및 범청학련 결성식(8.13~16) 개최시기와 중복되고 있어,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상황에 있지만 우리 정부가 범민족대회 등을 對南煽動 企圖로 인식하여 불허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교환단 방문과 이들 대회 개최가 상호 마찰

을 빚을 소지도 있다.

세번째로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기본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을 명시한 것(화해분야: 8차 고위급회담 이전, 불가침분야: 1992.9.1, 교류·협력분야: 1992.9.5)은 양측이 모두 「기본합의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當爲性을 인식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南北 相互 核査察에 대해서는 3월 14일 합의된 「남북핵통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시 양해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이외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核問題가 남북관계 진전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sup>14)</sup>

제7차 고위급회담 이후 개최된 제4차 정치분과위(5월 19일), 군사분과위(5월 25일), 교류·협력분과위(5월 30일) 회의에서 양측은 부속합의서를 單一文件 형식으로 제시하고 내용조정을 시작함으로써 남북간 기본 쟁점의 하나였던 부속합의서의 形式問題는 타결되었다. 따라서 통일3원칙의 해석, 부문간 우선순위, 접촉창구 문제 등 남북간 基本 爭點과 분과위 및 핵통제공동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부분의 事項들은 「부문별 단일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協商에서 계속 논의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향후 분과위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작성되느냐에 따라 「기본

---

14) 1992년 3월 14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共同發表文을 통해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3.19)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합의서」의 구체적 實踐事業 推進의 향배가 달려 있는 것이다.

정치, 군사, 교류·협력 분과위 제4차 회의 결과 교류·협력분과위에서만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意見接近을 이룬 반면, 정치분과위, 군사분과위 협상에서는 기존의 異見이 지속되어 본질적인 立場差異를 보였다.

첫째, 정치분과위 제4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단일부속합의서(7장 33조)와 「남북화해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를 제시하였으나, 북측은 단일부속합의서(9조 30항)를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기존의 問題條項을 고수하여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변질시키려 하였다.<sup>15)</sup>

둘째, 군사분과위 제4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實踐體系를 중심으로 편성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7장, 22조, 24항)를 제시한 반면, 북측은 「기본합의서」의 條項別로 나열한 「남북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부속합의서」(7조 19항)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측안에는 모든 형태의 정찰활동 금지, 외국의 무력사용·침략행위 불가담 고수 및 합의서와 국제조약·협정에의 불영향 반대 등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상호방위 철폐를 목표로 한 내용이 견지되었다.<sup>16)</sup>

셋째, 교류·협력분과위 제4차 회의에서는 대부분 意見接近이

---

15) 북측은 우리측 案에는 분열고착화·합법화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이는 통일의 목표를 없애고 통일운동 제거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앙방송」, 1992년 5월 20일자.

16) 군사분과위 제4차 회의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중앙방송」, 1992년 5월 25일자 참조.

이루어졌으나, 異見을 보이고 있는 事項은 우리측의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 승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당국간 대책마련 주장과 북측의 인적 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교통로 개설과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연계 등이다.<sup>17)</sup>

이와 함께 5월 27일 개최된 핵통제공동위 제5차 회의에서 南北 核査察 規定 채택이 무산됨으로써 3월 14일의 남북한 양해사항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18)</sup>

---

17) 교류·협력분과위 제4차 회의 결과에 대한 북측의 해석은 「중앙방송」, 1992년 5월 31일자 참조.

18) 제5차 핵통제공동위 회의에서 核査察 규정과 관련된 주요 爭點은 ①이행합의서 채택 여부, ②사찰대상 및 사찰횟수, ③내용구성체계, ④특별사찰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이행합의서 채택에 관해 우리측은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된 별도의 이행합의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북측은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의 일괄 채택을 주장하였다. 둘째, 사찰대상 및 사찰횟수에 대해 우리측은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구분, 相互主義에 입각한 사찰과 상호 同數原則에 의거, 연간 실시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상호사찰 실시를 주장한 반면, 북측은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의거, 북측이 의심하는 모든 美軍基地와 남측이 의심하는 영변지역 핵시설의 全面 同時査察을 주장하였다. 셋째, 내용구성체계에 있어 우리측은 정기사찰과 특별사찰로 구분하여 사찰절차 및 방법 규정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핵무기·핵기지와 핵시설·핵물질을 독립된 章으로 설정, 사찰대상별로 사찰절차·방법을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特別査察 문제에 관해 우리측은 일방이 지정하는 대상에 대해 24시간전 통고로 불시사찰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특별사찰을 강조한 데 반해, 북측은 핵통제공동위에서 합의된 대상만에 대한 사찰실시를 주장하였다. 제5차 핵통제공동위 결과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로동신문」, 1992년 5월 29일자 논평 “외세의존 동족배반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의 5월 30일 담화, 「평양방송」, 1992년 5월 30일자; 「로동신문」, 1992년 5월 31일자 논평 “외세의 장단에 춤추는 반역행위” 참조.



### Ⅲ. 向後 北韓의 對南協商 態度

앞으로의 南北關係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對南戰略은 무엇이며, 향후 對南協商 態度가 어떤 양상을 띠 것인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남북공존」 모색이라는 南北關係 再調整을 시도하면서도 統一戰線戰術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이후 對美·日 관계정상화 시도 및 대외개방 모색,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수용 등 유연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經濟難을 타개하고 급격한 세계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對南關係도 부분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두개 조선」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기본합의서」 채택·발효, 휴전선 이북에 대한 管轄權 명시<sup>19)</sup> 등에 응한 것은 吸收統一을 우려하여 「南北共存」을 수용함으로써 體制維持를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되나,<sup>20)</sup>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노선은 오히려

19) 日·北韓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7차 본회담(1992.5.13~15)에서 북한은 「하나의 조선과 평화통일」을 전제로 그동안 일본측이 요구한 휴전선 이북에 대한 管轄權 명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20)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빨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라고 언급하여, 해방후 최초로 南北韓 共存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경쟁체제를 共存體制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표명했다. 이후 김일성은 1989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 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

려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형성」을 강조한 이래,<sup>21)</sup> 북한은 1991년 1월 25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 본부를 결성하여 1990년 11월 20일 결성된 「범민련」을 지원하는 한편, 범민족대회 추진 등을 통해 한국 정부와 재야·운동권의 갈등을 유도하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성사를 위한 組織體系를 마련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행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통해 「민족대단결」에 입각한 통일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sup>22)</sup>

---

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여 「공존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였다.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 29.

- 21) 김일성은 이 시정연설에서 統一戰線 구축에 대해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들과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로동신문」, 1990년 5월 25일자.
- 22) 특히 김일성은 이 담화에서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동포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대오에 조직적으로 결속될때 비로소 공고한 민족적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자;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인 것만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근본담보로 됩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로동신문」, 1992년 1월 1일자.

더욱이 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을 “대결노선에 대한 민족대 단결 노선의 승리”로 평가하는 한편,<sup>23)</sup> 「기본합의서」 발효후에도 7.4 남북공동성명 統一3原則 중 특히 「민족대단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國家保安法 철폐, 訪北人士 석방, 窓口一元化 원칙 파기, 연방제 통일방안 채택을 위한 政治協商會議 소집과 같은 目標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sup>24)</sup> 특히 북측이 제3차 범민족대회 개최와 제2차 통일대축전 및 범청학련 결성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二重的 對南戰略의 지속을 예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協商過程에서 북측은 「기본 합의서」 내용 합의과정에서 철회했던 主張들을 부속합의서의 내용으로 재거론함으로써 기존의 對南戰略을 견지할 수 있는 근거

23)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91년 12월 25일자.

24) 김일성은 1992년 2월 20일 高位級會談 代表團과의 담화에서도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합의서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족대단결논리에 입각한 북한의 對南戰略은 1992년 4월 2일 日本 東京에서 채택된 범민련 제1차 공동의장단 공동 결의문에 명백히 드러난다. 이 결의문에서 범민련은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성실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민족대단결 투쟁 강화, 조국통일방도에 관한 민족적 합의 노력, 범민련 조직 확대 강화, 제3차 범민족대회 성과적 개최 노력 등을 강조함으로써 統一戰線事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4월 4일자; 또한 김일성은 4월 15일 80회생일 경축 연회의 연설에서 “은 거레는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의 자랑인 애국애족의 자주정신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라고 언급하여 「민족대단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김일성,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 「로동신문」, 1992년 4월 16일자.

를 확보하고,<sup>25)</sup> 각 공동위 및 실무협의회를 政治協商會議 산하 집회로 전환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측이 핵사찰 규정 작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한이 제출한 14개 주요 核施設에 대해 5월 25일부터 시작된 國際原子力機構 전문가사찰단의 사찰결과에 대한 국제적 반응을 검토한 후, 남북 상호사찰 문제를 조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北韓 核査察問題와 관련하여 북측은 南北 相互核査察을 지연시키면서 美軍 핵문제에 대한 정치선전을 극대화하여 核카드를 활용, 여타 분야에서의 우리측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반면에 북측이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여 共同委 先構成에 합의한 것이나, 前提條件 없이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제의함으로써 可視的 成果를 도출하고자 한 것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對美·日關係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표방하고,<sup>26)</sup> 대내적으로는 金正日의 원수 취임에 따른 統治力을 과시하는 한편,<sup>27)</sup> 경제난 해소를 위해 南側으로부터의 經濟協力을

---

25) 특히 북측은 고려연방제 10대 施政方針 등을 약간 변형, 화해분야 부속 합의서의 6개항으로 반영함으로써 향후 南北對話에서 북측의 聯邦制統一方案 討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우리의 민주질서 와해, 통일전선 구축으로 반공체제 이완, 한·미안보협력체제 와해 및 남북대화의 당국 주도원칙 파기 등을 모색하고 있다.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북측안 제 1조 3항, 제2조 1항, 제2조 4항, 제3조 6항, 제6조 5항, 제6조 6항 참조.

26) 북한의 對美接近 論理는 김일성이 1992년 4월 12일 워싱턴 타임스紙 기자단과의 행한 담화에 표출되어 있다. 「로동신문」, 1992년 4월 18일자.

27) 북한은 「기본합의서」 발효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수령님을 모신 우리 세대,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라고 논평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김정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1992년 2월 20일자 「로동신문」 사설, “북남합의서와 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참조.

획득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도 있다고 분석된다.

결국 북한의 향후 對南協商 態度는 「기본합의서」의 選別的·部分的 履行戰略을 바탕으로 兩面性을 보이면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기존 남북관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접촉 및 협상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즉 美·日 등이 남북관계 개선에 對北 關係改善의 前提條件化하고 있으며, 南北 經濟協力이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향후에도 이산가족·예술단 고향방문 실현, 예정된 시간내의 부속합의서 채택 등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하고 있다는 자세를 계속 과시하는 동시에, 南北對話를 통해 최대한의 實利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對南戰略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유지 명분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開放을 초래하고 이것이 곧 북한체제의 崩壞로 이어진다는 기존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대남전략 기초의 근본적인 수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측의 14대 국회 운영상황 및 대통령 선거 결과 등 政局推移에 따라 「민족대단결」 논리에 입각한 통일전선전술을 적극 구사하는 한편,<sup>28)</sup> 부속합의서 작성 협상에서 기존의 對南戰略을 견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매진하면서 남북

---

28) 북한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 회의에 대한 論評記事에서 “우리는 남측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합의서를 리행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데는 관심이 없고 북남관계에서 무엇을 하나 이루었다는 인상이나 풍기고 점수나 올려 <정권>연장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라고 기술하여, 남측의 政局推移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로동신문」, 1992년 5월 7일자.

관계를 北側의 意圖대로 유도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 IV. 南北關係 發展方向

南北韓은 「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를 통해 「대결적 공존」 관계를 벗어나 「경쟁적 공존」 관계에 진입하였으며 統一國家에 이르는 과도체제로서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始發點에 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하여 남북 상호간의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 제도화를 통하여 「평화정착 및 공존공영」을 도모할 수 있는 第一步를 내디딘 것이다.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남북한은 공동위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制度的 裝置를 형식상 마련하게 되었지만, 「기본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실천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핵통제공동위 회의에서 남북 핵사찰 규정 작성이 무산됨으로써 남북관계가 다시 冷却될 상황에 처해 있다.

북측은 현재 國際原子力機構의 査察을 내세워 남북 상호사찰 규정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南北和解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우리측이 북한의 核問題 解決을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의 先決條件으로 설정하여 對北協商에 임하고 있으며, 북한의 核武器 개발 포기

대한 국제적 압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북한은 南北 相互査察 규정 채택에 호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까지의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협상에서 양측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일 것이나, 이미 상술하였듯이 북한이 대내외적 이유로 「기본합의서」의 이행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南北接觸 및 協商을 외형적으로나마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작성시한내의 합의도출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산가족·예술단 교환방문 실현문제에 대해서 6월 4일자 연형묵 총리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재고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이미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核問題 이외에 또 다른 對北非難 구실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6월 5일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시 前提條件 없는 진행에 동의함에 따라 그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범민족대회 개최 등을 8.15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남북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한은 「민족대단결」 논리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고 統一問題에 관한 우리 사회내부의 意見對立을 조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대회 개최를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며, 우리측은 북측의 이러한 기도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는 북측이 우리의 정권교체기의 政局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國際的 制裁手段의 한계 등을 이용하여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북접촉·협상을 전면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은 궁극

적으로 南北協商에 순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이러한 南北關係의 懸案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共同委에서 이행·실천할 부속합의서가 작성되고 예정대로 부속합의서 작성후 공동위 운영이 개시될지라도 공동위가 「협의 및 실천기구」이므로 실질적인 南北合意事項 도출 및 실천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협력」 시대는 공동위에서 실질적인 남북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를 통해 우리 민족은 民族統一이라는 염원을 성취할 수 있는 好機를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남북공존」 모색이라는 南北關係 再調整을 시도하면서도 統一戰線戰術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고, 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戰略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를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난 및 국제적 고립 심화, 후계체제 문제 등 대내외적 요인은 궁극적으로 北韓의 變化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곧 統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有故 및 북한의 경제난 등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증폭되어 김정일로의 權力移讓 이후 북한 내부에서 급격한 政治變動이 발발한다면, 남북관계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29)</sup> 따라서 적극적인 對北

29) 영국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서는 經濟改革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1990년대 내에 국지적인 민중봉기의 발생 또는 민중봉기 발생 이전 군부 및 정치엘리트의 쿠데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p. 90~91.



孤立化政策 등 우리가 보다 강경한 對北政策을 모색·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 또는 체제붕괴를 촉진시켜 早期統一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통일비용의 최소화, 전쟁재발 방지,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을 감안할 때 「기본 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漸進的·段階的으로 民族統一을 모색하는 신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南北關係 發展方向은 「남북 화해·협력시대 개막 → 평화정착 및 공존공영 → 남북연합」의 점진적인 發展構圖에 입각한 것이어야 할 것며,<sup>30)</sup> 이를 위해서는 北韓體制의 변화가능성 및 대남전략 변화가능성과 그 정도를 면밀히 분석·평가한 바탕위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단계적으로 입안·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점진적·단계적 통일정책은 단순한 통일지연정책 또는 북

---

30) 南北聯合 구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北韓이 주장해 온 聯邦制 실현의 先決條件이 철회되는 동시에 상호실체 인정·존중의 토대위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民族共同體憲章 또는 「국가연합 구성에 관한 合意書」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聯邦制 실현의 先決條件은 첫째, 군사파쇼통치 청산 및 사회의 민주화 실현(①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 철폐, ②모든 정당·사회단체 合法化 및 자유정치활동 보장,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애국적 인민 석방, 이들에 대한 모든 형벌 무효화, ③민주정권으로 교체), 둘째,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제거(①對美 平和協定 체결 ②주한미군 철수), 셋째,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 저지 및 內政干涉 철폐 등이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참조. 1989년 9월 11일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民族共同體憲章의 내용으로는 ①統一의 원칙 및 기구 설치 합의내용, ②통일실현시까지 南北關係 전반에 걸친 기본적 질서와 방향, ③통일방안, ④불가침약속, ⑤「남북연합」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 등이었다.

한체제 유지 지원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함으로써 통일비용 최소화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민족화합·민족공영을 실현하는 통일을 目標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V. 結 論

「기본합의서」라는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마련한 이후 南北韓은 協商過程을 통해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동위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共同委의 운영 지침이 될 附屬合意書 채택과 북한의 核問題 해결이라는 현안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현안 가운데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최악의 경우 민족의 대재앙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남북 화해·불가침을 규정한 「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核問題 解決을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의 先決條件으로 설정하여 남북 상호사찰을 실현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완전히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분과위 협상에서 북측은 「기본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철회했던 주장을 재거론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나, 아직 남북 양측 모두에게 협상을 거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 分科委 協商에서 어떤 내용의 「부속합의서」가 작성되느냐에 따라 향후 「기본합의서」의 이행 및 남북관계 진전여부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 부속합의서

가 향후 南北關係 발전의 지침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여 부속합의서 내용에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實踐性」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修正·補充條項을 근거로 개괄적인 윤곽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다시 共同委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우리측으로서는 북한의 對南戰略에 대한 정확한 분석·전망에 기초하여 우리측 對北協商 원칙과 세부지침을 확립하고, 분과위 및 공동위 협상에서 일관성있는 주장을 제기·관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성과가 조기 도출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측은 「창구일원화」, 「당사자 해결원칙」, 「상호주의」 등 基本原則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측의 開放·改革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북측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當面 懸案問題가 해결된 이후 예정대로 제8차 고위급 회담 이전에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공동위에서 남북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사업이 추진되면, 高位級會談의 役割과 位相은 무엇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공동위에서 부속합의서를 이행·실천하게 된 상황에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議題로 개최된 고위급 회담의 지속여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향후 고위급 회담이 어떤 議題를 가지고 어떤 形態로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새로이 작성될 부속합의서의 이행·실천을 통해 남북간 平和定着 및 共存共榮을 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화

해적 공존」 단계로 진입시켜 南北聯合을 실현하여 궁극적인 民族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대내외적 統一與件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빈 면

## 第2會議 討 論

김 달 중 교수(사회): 정규섭 박사께서 그간 南北韓間에 합의·추진된 사항, 여러 문제점 및 평가, 북한의 意圖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향후 南北關係 진전 방향 등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다.

우선 세 분 지정토론자들께서 각각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럼 먼저 한승주 교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

한 승 주 교수(지정토론): 정규섭 박사께서 좋은 논문을 써 주시고, 특히 「기본합의서」와 관련, 고위급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의 爭點을 잘 정리해 주셨다. 또한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나갈 방향 등도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다.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기본합의서」의 해석 및 실천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爭點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理由 또는 背景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북한의 意圖가 설명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의도 뿐만 아니라 「기본합의서」 채택과 관련한 남한의 意圖와 目標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좀 더 깊이 살펴 본다면 다른 結論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남북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러 난관이 해결되지 않겠으나 하는 樂觀的인 展望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부의 爭點과 후반부의 展望 사이에 들어갈 설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

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북한의 의도만 보면 북한으로서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意義가 있었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으로, 즉 남북한 經濟協力 같은 분야에서는 다소간 실천하는 척하는 편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북한의 目標(발표문에서 언급한 북한의 목표에 대해서는 대개 수긍을 하지만)에 따르면 다른 모든 면에서는 북한이 향후 실천에 합의를 해 나갈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기본합의서」의 의미 및 實踐問題와 관련,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문제는 정박사가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어떤 면에서 論爭을 하고 있으나, 무엇 때문에 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냐 하는 점인데, 이는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接近方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어떻게 해서 이러한 爭點과 異見이 생기고 있는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는 “북측이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統一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너무 공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를 통해 民族統一이라는 염원을 성취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라든지 발표문 마지막의 문구 같은 것은 統一院 또는 政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客觀的 分析으로는 너무 낙관적이고 공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첫번째 접근방법과 두번째 접근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남한과 북한측의 意圖를 파악하고 남한측의 實質的인 目標에 대한 언급이 있어

야 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이러한 狀況 하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기하는 것이 더 價値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측의 意圖, 특히 북한측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북간 「기본합의서」의 實踐問題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박사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남한이 북한과의 합의없이 一方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放送·出版物의 交換·開放과 관련 그것이 꼭 북한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가,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또 訪北者에 대한 법적 제재문제도 꼭 북한과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가, 혹은 북한에 대한 양보의 조건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기본합의서」에 합의한 이유로는 우선 4월15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축제화하려는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北韓體制 보전, 미·일과의 교섭, 김정일의 權力承繼上의 필요, 핵 문제 회석 기도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북한의 目標에 근거하여 향후 「기본합의서」의 推進方向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기본합의서」의 實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북한이 이에 호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정책 및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본합의서」 채택과 관련한 우리측의 목표는 현 체제를 인정받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양측 지도부간 회담 등 여러 수



준의 交流를 실현하며 북한의 開放을 誘導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시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더라면 합의서 채택 기회가 무산된 데에 따른 非難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南北韓은 지난 12월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나, 남한의 경우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실천하리라고 믿고 「기본합의서」 채택을 수락했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修辭的인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現實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信賴構築問題에 있어서도 남한이 북한에게 信賴構築 必要性을 역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은 一方的으로 먼저 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核問題와 관련, 제1회의에서 개진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해 볼 때,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IAEA 査察도 있고 해서 북한이 앞으로 核再處理施設 혹은 濃縮核施設을 통해 노골적으로 核武器를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이 이미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舊蘇聯으로부터 密搬入한 플루토늄으로 이미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남측이 핵문제 해결과 관련 相互査察을 제의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제조했거나 핵물질을 보유했다면, 그리고 核再處理 工場을 비밀리에 건설할 수 있다면 相互査察이라는 것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 남한은 북한이 여러가지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바 있는 「同數原則」, 「隨時査察」 혹은 「特別査察」 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效果없는 相互査察과 북한이 받아 들일 수 없는

條件을 극구 강요하는 것이 남한으로서 과연 최선의 방법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이 軍事施設 開放과 査察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지적된 내용 중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査察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없다. 결국 이는 핵무기 이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북한이 相互査察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상호사찰이란 사실상 信賴構築이 상당히 진전된 후에도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核問題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남측이 제시한 條件이 변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과거에 남한은 IAEA 査察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條件으로 삼고 있었으나, 북한이 IAEA 사찰 수용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남한은 IAEA 사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相互査察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相互査察이 이루어지더라도 위와 동일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김정일 政權이 體制維持를 위해 핵무기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 연관관계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核開發을 부정하면서, 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남겨두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이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自認한 바 있으며 그런 戰略을 위해서라면 실제로 核開發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가 抑止力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核武器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이 다른 이유에서 核武器를 개발할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로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意圖에 대해 우리가 맹목적으로 體制維持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사 회: 그러면 다음은 여영무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여 영 무 소장(지정토론): 정규섭 박사께서 南北協商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셨다. 회담의 進展狀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협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정박사께서 북한의 對南戰略을 정확하게 분석하였으며 그 전략의 변화에 따라 對北協商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동안 평양방송, 북한방송, 로동신문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對南認識은 解放 이후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즉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植民地이며, 따라서 미제국주의자의 核武器와 군대만 철수되면 統一戰線 등으로 容共政府를 수립하여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는 북한의 對南認識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변화할 생각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표면에 나타난 문서라든가 放送媒體 등을 통해 분석해 볼 때 북한의 對南認識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의 對南戰略 目標 변화여부 및 변화정도에 대해서는 兩論이 있으나, 이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북한의 행태를 보

는 시각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對南認識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은 6.25 이후부터 북한은 對南協商이나 統一問題를 논할 때 기만, 허위, 위장평화 등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이 변화하였다고 보는 측은 좀 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컨대 북한의 對南戰略 목표는 남한을 共產化한다는 것으로, 본인이 볼 때 자신들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에 의거한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라 吸收統合한다는 목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戰術的인 變化는 분명히 있다. 남북한 當局間 會談, 고위급회담, 「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 8.15 이산가족 교류 합의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戰術的 變化라고 생각된다. 또한 國際的인 變化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가입, 대미·일 관계개선 추진, IAEA 핵사찰 수용 등 다소간의 戰術的인 變化는 분명히 있다.

북한의 외형적인 변화 이유와 관련, 북한은 生存을 위한 탈출구로서 이러한 戰術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戰略目標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행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8.15 「범청학련대회」, 「범민련대회」, 「통일정치협상회의」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民間次元의 교류 활성화, 自由往來, 그리고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통일 3원칙 주장의 경우 「자주」 논리 역시 「하나의 조선」, 「고려연방제」 등의 共產化 統一論理가 표출된 것이며, 「민족

대단결」의 경우에도 남한의 保安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방북구속자 석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결국 남한의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장치를 해체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對南戰略에 입각하고 있다. 김일성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기본합의서」는 잘된 문서이므로 절대로 실천해야 하고, 7천만 민족의 염원을 담은 것이므로 남북한이 힘을 합쳐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反民族的이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分列主義者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이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려면 남한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고려연방제」 수용, 保安法 철폐, 訪北者 석방, 자유왕래 보장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기본합의서」를 휴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에서는 남북 相互査察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호전성, 테러리즘, 對南暴力革命의 기초가 되는 「핵이빨」을 뽑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核開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나왔고 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견해로는 北韓體制, 김일성·김정일체제가 흔들리니까 매달릴 곳은 核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즉 핵무기가 있으니까 염려말고 주체사상과 김일성을 따라 오라는 논리를 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컨대 북한의 對南認識 혹은 目標은 기본적으로 不變이며, 다만 1990년 이후에 전술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2년은 大統領 選舉의 해이므로 고위급회담 등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도로만 유지될 듯하며, 뚜렷한 진척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목표는 當局間의 會談은 명

택만 유지를 하고 非當局間의 協商으로 남한의 혼란을 조장하며 남한의 정치세력간, 정당간, 계층간, 한·미간 反目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현 정권의 임기가 7~8개월 남은 까닭에 權力漏水現象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지는 政權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차피 북측도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의 對南認識이나 戰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南北對話의 획기적인 국면타개나 진척을 위해서는 북한에도 舊蘇聯에 서처럼 엘친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아무리 남북대화를 오래 해 봐야 획기적인 진척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 회: 끝으로 서강대 손학규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겠다.

손 학 규 교수(지정토론): 앞에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규섭 박사께서 「기본합의서」의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다. 본인은 여기에 와서 professionalism을 느끼게 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들이 구체적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基本的인 認識을 前提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여겨지며, 본 논문이 정책입안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具體的인 方案을 내놓는 듯한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분석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問題意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는, 즉 총체적·거시적·가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생각해

불 필요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취하는 남북한간 長期的인 그리고 바람직한 發展方向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한민족공동체」적인 統一을 적극 추진하는 의욕과 의지가 담긴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데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우리 内部의 문제이든 혹은 外部의 문제이든)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경우 統一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도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식의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는 接近方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것은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과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흔히 상대방과 우리를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는 暗黙的으로 북한 對 남한만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나 「相對」나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다.

이러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남북한 統一問題에 접근할 때, 남북 문제 진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침 여영무 소장께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기본적인 인식이 어떻든 南北關係는 진전되어 왔으며, 북한의 변화는 積極的으로 認定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나 북한이 기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으며, 그 동안에 있었던 변화는 戰術的인 變化일 뿐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무엇이 변화했는가 하는 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統一問題에 대한 접근은

攻勢的인 立場에서 守勢的인 立場으로 변한 데 반해, 남한의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實質的으로 攻勢的인 立場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입장이 이전에는 北進統一 주장과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논외로 한다면 平和共存의 입장이었던 반면, 이제는 북한이 평화공존의 입장이고 남한은 어떻든지 적극적으로 統一의 기반을 형성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또한 이전에는 북한이 現狀打破的인 입장이었지만 현재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體制維持的인 立場이고, 오히려 남한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상타파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현실이 남북한 統一問題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環境을 조성한다면, 國際環境은 남북한 주변당사자들간의 利害關係와 관련된 다른 측면의 環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있어서 미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經濟價値로서 한반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게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安保價値가 중요할 것이며 統一 여부를 떠나 한반도를 분명하게 장악한다는 安保利害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인 남북관계 진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은 일반적으로 한반도 安保的 緊張狀態 지속을 통해 군사적 또는 부분적으로 經濟的 利得을 취해 왔다고 보여진다.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環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북한의 딜레마는 體制維持와 동시에 對外開放을 시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즉 북한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곤경에서 살아 남으면서 體制維持(더욱이 이는 김정일의 權力承繼가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절실한 문제가 될 것이다)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對



外開放을 해야 하는데 대외개방은 결국 體制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북한의 南北關係 및 統一政策의 기본이 될 것이다.

한편 남한은 교류·개방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교류·개방을 통한 북한 변화의 모색은 한편으로는 對北 孤立化政策을 동시에 수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딜레마라고 하겠다. 즉 남한은 開放과 孤立化가 정책차원에서의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특히 이러한 孤立化政策은 우리 정부의 統一政策 수행의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압력, 특히 미국의 압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남북한 양측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우리 정부의 統一政策, 또한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統一問題나 南北關係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開放시키기 위해 경우에 따라 북한에게 상당히 적극적인 讓步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북한의 목을 조이는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듯하다.

이러한 딜레마는 現 段階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市民들로서도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이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南北問題 접근의 基本姿勢를 다루면서 정규섭 박사는 “對北孤立

化政策이 있을 수 있으나, 점진적·단계적 민족통일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섭 박사가 말씀하시는 漸進的·段階的 民族統一의 모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 본 딜레마 중에서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넓게 수용하고, 讓步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박사의 발표문중 각주 30번을 보면 “南北聯合 구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해 온 聯邦制 실현의 先決條件이 철회되는 동시에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으로 인해 남북연합이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첫번째 질문은 결국 南北問題 접근의 기본자세에서 적극적인 對北 孤立化政策을 환원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박사의 논문에서 지적된 남북관계 접근에 있어서의 基本原則과 관련, 우리측은 “窓口一元化, 當事者解決, 相互主義 등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창구일원화, 당사자해결, 상호주의 등이 대한민국의 基本政策으로서 이미 언급한 남북관계의 基本條件과 여기에서 파생된 근본적인 딜레마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인가 하는 것이다.

窓口一元化 原則의 경우, 북측이 民間次元의 창구를 통해서도 접촉해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하튼 북측에서도 공식적·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當局이다. 따라서 교회나 학교 등 다른 民間次元(심지어는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양의 訪北까지를 포함해서)의 접촉이 실제로 그동안 남북한관계 진전에 적극적으로 障礙要因이 되었던가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바라보자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창구일원화를 실질적으로 견지하더라도 이를 公式적으로 표방하여 공식적인 창구 이외에 가질수 있는 접촉의 틀을 깨지 않는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을 開放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當事者解決 原則의 경우에서도,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美國問題 등이 과연 북한측에 의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박사는 핵무기 개발의지의 封鎖問題와 관련,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의 先決條件으로 설정하여 남북 相互査察을 실시하고 이를 制度化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지를 완전히 봉쇄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제1회의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의 具體的인 段階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지 봉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구조적·원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지를 제거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接近方法을 취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잠깐 보류해 놓았던 美國問題와 관련, 우리측에서 지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계속 제기했던 核問題만 놓고 볼 때, 우리측이 북측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수용되면 또 요구를 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 IAEA 核安全協定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북한은 절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장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核安全協定에 서명하자 國際核査察 수용을 요구하면서 북한은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수용한다 하더라도 2~3년 시간을 끌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북한이

시간을 앞당겨 수용하자 그 다음에는 相互査察·플루토늄 포기를 요구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위협까지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물론 본인으로서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적인 단계를 상상할 수 없지만,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끝없는 요구를 통해 북한을 枯死시키는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南北關係 改善에 궁극적·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선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統一政策方案이 추구하는 바가 남북간 「國家聯合」이라면, 「국가연합」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포기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인데, 북한에게 體制 拋棄, 김정일 權力承繼 拋棄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통일정책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간 協商問題는 이러한 틀 안에서 微視的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 회: 세 분 지정토론자께서 시각을 달리하는 좋은 지적과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다. 주제발표자는 북한의 對南戰略과 남북관계 발전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역시 二重性을 강조하고 변화 결과로 나타난 合意事項과 향후 남북관계 발전전망을 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발표자는 북한의 종래 對南戰略의 지속성 및 「남조선 혁명로선」 전략에는 변화가 없음을 언급하고, 결국은 북한자체의 體制維持나 權力承繼 여부를 떠나 「기본합의서」의 부속 합의서 채택과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共存共榮의 관계로 진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조심스러운 樂觀論의 입장을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북한의 對南戰略 및 協商戰略이 과연 변화하였는가, 변화하였다면 왜 변화하였으며, 變化內容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며, 토론자들께서는 이에 대한 상반되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제2회의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역시 북한의 核開發 意圖問題이다. 제1회의에서는 核 자체의 문제가 논의되었던 반면, 제2회의에서는 특히 의도문제가 부각되었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 북한이 協商戰略 혹은 體制維持라는 國家目標 달성의 합당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나아가 當事者原則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당사자 원칙과 관련, 한반도문제는 統一問題, 平和問題, 繁榮問題의 3차원적 문제이며, 통일문제에서는 당사자원칙을 강조해도 문제가 없지만 평화문제나 核問題의 경우 東北亞 國際構造가 관련되어 있으며, 번영문제에서도 남북한 외에 동북아 차원의 多者的 構造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와 관련, 미국 및 IAEA 역할문제 등 多者關係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雙務關係와 다자관계간의 연결고리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대화나 經濟協力과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문제 역시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토론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물론 이러한 몇가지 핵심문제를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

정 규 섭 박사: 여러가지 좋은 지적에 대해 감사드린다. 먼저

포괄적인 측면에서부터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한승주 교수께서는 논문에 政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문구가 있는데 학자로서 이런 언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지적과 관련 본인 나름대로는 「기본합의서」의 歷史的 意義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퇴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기본합의서」가 하나의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분단 반세기만에 南北 當局者間에 하나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 자체는 南北關係가 엄청나게 진전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합의서」 자체는 손학규 교수께서 지적하신 美國問題와도 연관이 되는데, 제3자의 개입이 없이 南北韓 當事者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남북한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核問題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脫冷戰時代의 국제환경속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남북대결·반목·갈등을 지속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의 不幸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항상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보고 있으며, 일단 「기본합의서」의 의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기본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韓半島 統一問題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外勢의 문제를 지나치게 고려한다면 이는 敗北主義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는 과연 북한의 對南戰略이 변화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상반된 시각을 보였으며, 특히 여영무 소장은 북한의 對南認識 및 對南政策

은 불변이라고 하셨고, 손학규 교수는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보아야 않겠는가 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中間的 立場으로 북한은 분명히 변화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족 대단결」 논리에 의한 統一戰線戰術은 북한 체제가 와해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兩面性에 우리가 여하히 대처해서 韓民族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의 對南戰略 문제는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불구하고 基本論理는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協商過程에서도 북한은 기존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들의 對南戰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몇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겠다. 먼저 발표자의 입장이 표면적으로는 對北孤立化政策을 취하지 말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孤立化政策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손학규 교수의 지적과 관련, 각주에서 언급한 「남북연합」 구성시 북한이 제시한 聯邦制 先決條件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對北孤立化政策 혹은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는 잘못하면 韓民族 共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불행이고, 漸進的·段階的으로 통일에 접근해 갈 때 韓民族의 생존·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승주 교수의 지적 중 남북간 爭點 및 기본논리간의

차이 발생이유와 우리 측의 意圖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다. 또 우리 측이 一方的으로 讓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轉向的인 檢討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논문에서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북한의 변화에 파급효과가 있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對南戰略이 변화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 한승주 교수가 말씀하신 訪北者 석방문제라든지, 이인모 송환문제가 전향적인 수용·검토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는 않겠다. 여하튼 북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北韓 體制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또한 政府의 정책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향적인 정책도 상당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북한의 核問題와 관련,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본인은 核問題 전문가가 아니며 제1회의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북한의 核開發問題와 실질적인 對北 交流·協力問題를 연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본인은 양자를 연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의도이든 북한이 核問題에 관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비핵화 공동선언」 등과 같은 남북간의 合意事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말로 核開發을 할 의지가 있는지,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이 核問題를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등 많은 것을 얻어 낸 것은 사실이



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核開發 포기와 交流·協力問題를 어느 정도 서로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1992년내에는 大統領 選舉 등으로 남북한간의 교섭에서 획기적인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여영무 소장의 지적과 관련, 남북한간 接觸·協商의 持續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편이며, 우리가 서둘러 對北讓步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의연한 자세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서서히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政府當局 뿐만 아니라 國民次元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 회: 지정토론자들에게는 후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一般討論을 시작하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제기하실 수 있도록 한 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질문을 받은 후 發表者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다. 일반 질문자는 2~3분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일반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겠다.

일반토론자: 북한이 변화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남한은 統一政策과 對北認識이 변화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대표적인 예가 國家保安法이라고 생각하는데 反國家團體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한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백 상 창 소장(한국병리연구소): 랭군사태 이후 김일성은 休戰線에 조기를 계양함으로써 상당한 心理的 效果를 거두었다. 현재 핵문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解放

後 남북관계를 보면 세 가지 特徵이 있다고 본다. 첫째,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이 主導權을 쥐어 왔으며, 둘째, 북한은 명백한 目標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하였으며, 남한은 뚜렷한 目標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 셋째, 김일성은 힘(power) 앞에서는 약한 측면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불변한 어떤 意圖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남한은 변하지 않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戰略目標 달성을 위한 一貫的인 政策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윤 영 오 교수(국민대): 우리나라에서는 國內政治와 對北政策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維新의 경우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이루어졌다. 발표자께서 「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특히 제3국인 미국의 壓力이나 불평을 감수하면서 추진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남한의 政치를 의식한 부분도 있다.

여영무 소장께서 올해에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남한에서 大統領 選舉 이전에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을 위해 急進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역시 북한에 상당히 利益이 되는 조건이 관철된다면 南北關係를 급진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보기에 남한의 對北政策이 일관성있는 民族統一 문제나 외교정책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國內政治와 연계되고 있는 측면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 또한 연계되어 있다면 이러한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질문하고 싶다.

사 회: 남북한문제, 統一問題가 세 가지 구조의 연결이라고 하는 구조상의 문제가 제기된 듯 하다. 통일의 문제는 南北韓關係, 國際構造, 國內構造가 構造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한 당사자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듯 하다. 여영무 소장의 말씀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기로 하겠다.

여 영 무 소장: 북한의 變化與否와 관련, 토론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내용을 열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열거된 내용들이 戰略의 변화인가, 단순히 戰術의 변화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관련, 戰術的인 變化는 분명히 있었으나, 戰略變化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본합의서」와 관련, 합의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肯定的인 일이다. 다만 문제는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解放 이후 남북한이 변화된 것이 없는데(물론 남한의 政權은 바뀌었고, 북한은 김일성 체제가 유지되어 왔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바는 차치하고 남한은 資本主義式 吸收統一을, 북한은 共產主義式 吸收統一을 지향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화과정에서도 북한 政治·軍事問題를 우선하겠다고 주장하고, 남한에서는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하여 교류를 우선하고 漸進的인 統一을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남북대화의 國內政治와의 연계문제와 관련, 남북대화가 국내정치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사 회: 다시 一般討論을 시작하기로 하겠다.

김 수 정 기자(서울신문): 북한의 對南戰略 變化와 관련, 우리 정부의 對北政策 집행과정에서 권력 엘리트(power elite)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연형목 등 실질적인 對外關係 혹은 북한 내부를 움직이는 권력 엘리트, 즉 新進勢力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에서는 아무리 戰略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남북회담시 남한에 온 기자들이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한 방송에 나와 남한을 소개하는 모습은 固定的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의 새로운 세력의 부상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

신 학 림 기자(Korea Times): 현재 정부는 核問題 해결을 남북관계의 實質的인 改善과 연계시켜 놓고 있는데, 연계 정도·시기·기간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盧泰愚 大統領이 육사 연설에서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連繫戰略이 북한 체제의 속성상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체제는 그 속성상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合作事業 등 실질적인 남북한 協力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으로부터의 經濟協力이 없이도 상당히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接近方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장기적인 統一政策과 관련되는데,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80% 선에 도달한 이후 통일하는 것이 부담이 없다는 인식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핵문제를 經濟協力問題에 연계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統一政策과 상충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사 회: 마지막으로 곽태환 교수의 질문을 듣기로 하겠다.

곽 태 환 교수(Eastern Kentucky University): 북한의 핵問題와 남북한관계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본인은 근본적인 接近方法과 假定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북한의 핵開發問題와 관련, 80% 정도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前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과연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제에 대해 異意가 있다. 이와 관련, 정주영 국민당 대표가 “북한의 핵문제를 IAEA에 맡기지 왜 南北間에 해결하려다 남북관계 개선에 지장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라고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언급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표자도 핵問題 先決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再考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赤化統一」, 남한은 이를테면 「청색통일」이라는 統一方案을 상정하고, 統一은 우리 방안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남북한 共同의 統一方案이 창출될 필요는 없는가? 북한사람이 여기

에서 발표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民族統一研究院에서 우리 식의 統一方案이 가장 좋다고 발표를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통일방안을 창출할 필요는 없는가를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사 회: 바로 그런 취지에서 學術會議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좋은 지적과 몇 개의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정박사께서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정 규 섭 박사: 첫째, 對北認識이 변화하였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北韓 變化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기로 하겠다.

둘째, 남한측에 시종일관된 주장이 있었는가 라는 백상창 소장의 질문과 관련, 시종일관된 주장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對北問題를 國內政治化하는 문제에 대한 윤용오 교수의 지적과 관련, 과거에 이러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對北問題가 國內政治化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발표문에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북한의 권력 엘리트 문제와 관련, 북한의 권력 엘리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實質的인 권력 엘리트 변화에서 南北關係의 변화를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核問題와 남북관계의 實質的 改善間의 연계문제와 관련, 핵문제는 제1 회의에서 나와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근본

적인 假定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여섯째, 共同統一方案 모색에 대한 곽태환 교수의 질문과 관련, 民族統一研究院에서 정부 통일방안만 거론한다고 은연중에 비판하신 것 같은데, 발표논문에서 한국정부의 統一方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자체가 언급된 바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한 「남북화해·협력시대」, 「平和定着, 共存共榮」, 「남북연합」 등에 대해서는 북한 학자들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한다.

사 회: 정규섭 박사의 답변을 잘 들었다. 그러면 5분여 남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자들의 추가적인 지적을 듣기로 하겠다.

순 학 규 교수: 거의 일관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남북간에 體制競爭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統一로 가는 길에 過渡的인 統一段階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과도적인 단계에 북한을 어떻게 誘導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들은 우리가 통일의 具體的인 方案을 모색하면서 고려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發表者가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聯邦制 실현의 先決條件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肯定的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核問題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곽태환 교수가 잘 지적하셨듯이 핵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끌고 나갈 것인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南北韓 關係改善은 현 수준에서 담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것이 남북한간의 共同體的인 統一, 장기적인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사 회: 다음으로 여영무 소장의 추가적인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

여 영 무 소장: 광태환 교수가 북한 核開發問題와 관련하여 假定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MBC-TV, KBS-TV가 방영한 核問題와 관련한 보도에서 두 명의 核工學 專門家가 나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核武器를 만들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強辯하지만 호랑이를 고양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주장이 語不成說임을 밝힌 바 있다.

또 한 가지는 남한이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관련,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 체제가 改革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 등 많은 부분이 改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체제의 脆弱部分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면에서는 확연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東西獨 統一, 舊蘇聯 및 東歐의 몰락이 사회주의 70년 실험의 실패를 반증해 주듯이 이데올로기문제나 체제문제에서 優越體制가 劣等體制를 흡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사 회: 그럼 마지막으로 한승주 교수의 말씀을 듣겠다.

한 승 주 교수: 「기본합의서」와 관련한 討論에서 본인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지금 당장 「기본합의서」의 實踐의 可能性이 그렇



게 크지 않다는 논지였지 그 意義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본인도 조금 전에 정박사가 말씀하신 象徵的 意義에 대한 지적에는 동감이다.

「기본합의서」가 지금 당장은 실천되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틀을 마련해 놓은 이상 앞으로 부분적으로 南北關係가 진전을 보이고 또한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확대시키고 또 統一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메카니즘과 골격(framework)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統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곽태환 교수도 統一問題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서야 통일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目標을 통일에 둘 것이 아니라 우선 南北關係 發展에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만을 계속 고집할 경우, 북한은 남한의 통일을 吸收統一이라고 여기고, 남한은 북한의 통일을 赤化統一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또 남한은 남한의 統一方案이 좋다고 생각하고 북한은 북한의 통일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서로간에 妥協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남북한이 協商을 통해서 統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統一보다는 南北關係 改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상태가 核問題 解決이나 하는 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核武器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意思·能力·施設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證明하는 것을 말한다면, 북

한측에서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만약 相互査察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북한이 核武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과연 증명해 주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에 대한 定義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定義는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한이 獨自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協議가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核問題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간, 한국정부내 또는 미국정부내 政策一元化와 窓口一元化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한 후, 미국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 한국이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현재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앞으로 한·미간에 核問題를 풀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네 가지의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첫번째 가능성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의 立場을 계속 維持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이 남한측의 査察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설사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만족할 수 없는 條件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번째 가능성은 IAEA 査察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미국이 먼저 對北韓 IAEA 査察結果를 수용하는 선에서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남한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가능성은 남한이 對北韓 IAEA 사찰결과를 수용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이는 韓·美關係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네번째 가능성은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政策을 協議하여 方向을 轉換하는 방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상당히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사 회: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언급을 한 뒤에 회의를 끝내고자 한다. 우리는 “북한은 변하는가”하는 문제를 대략적으로 討論을 하였다. 그 결과는 북한이 변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對南革命戰略을 계속적으로 구사하는 등의 二重戰略을 보이고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진 것 같다. 따라서 南北對話도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南北關係, 統一問題를 이야기하면서 유독 북한만을 대상으로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과연 남한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얼마나 변화했는가 하는 문제가 이번 學術會議를 통해서 지적된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통일정책을 國內政治的인 需要에 의해서 이용하지는 않았는가, 과연 우리는 옳았는가, 우리는 가는 길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自己省察은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核問題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이 核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단순한 意圖問題, 또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核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査察이라는 하는 방법에 집중하기 보다는 남북한

간에 核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創意的인 代案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대화 추진에 핵문제를 연계하는데 있어서도 남북관계의 發展을 위해 현재의 수준을 능가하는 창의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통일문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과 平和·戰爭과 관계되는 核問題는 쌍무적이면서도 이와 관련있는 주변강대국,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國際的 諸般條件과 핵문제는 연관이 있는 것인데, 戰爭과 平和의 문제와 핵문제가 단순히 雙務的 次元에서 해결되리라고는 전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南北關係는 손학규 교수가 언급하셨듯이 體制競爭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에서 보다 신중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남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學術會議를 계속 개최하여 討論의 場을 마련한다면 좋은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협상에 영향을 미쳐 협상 자체를 永續化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南北協商의 경우 지난번에 중요한 結果가 나왔지만, 그 결과 이후에 다소 실망하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기본합의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며,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남북한은 또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협상이 永續化되는 것처럼 우리 學術會議도 영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으로 제2회의를 마치기로 하겠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정규섭 박사, 토론에 참가해 주신 세 분 선생님, 一般討論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빈 면

## 〈附錄〉 會議概要

### 第5回 國內學術會議

####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 日 時: 1992년 6월 16일 (화) 13:30~18:20

○ 場 所: 타워호텔 (본관 1층 Rex Room)

○ 會議日程:

13:30~13:50 登 錄

13:50~14:00 開會辭: 李秉龍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14:00~16:00 第1會議: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 司 會: 河 英 善 (서울大 教授)

● 發 表: 全 星 勳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討 論: 南 晚 權 (KIDA 軍備統制研究센터 所長)

李 春 根 (世宗研究所 研究委員)

趙 青 遠 (科技處 原子力協力課長)

16:00~16:20 Coffee Break

16:20~18:20 第2會議: 南北協商의 成果와 南北關係 發展方向

● 司 會: 金 達 中 (延世大 教授)

● 發 表: 鄭 圭 燮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討 論: 孫 鶴 圭 (西江大 教授)

呂 永 茂 (東亞日報 安保統一問題研究所長)

韓 昇 洲 (高麗大 教授)